

제42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결산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4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1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1

(10시38분 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0시39분)

○소위원장 박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과기정통부1차관 구혁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2차관 류제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책기획관 전영수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4권입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및 IITP 감사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시정, 황정아 위원 징계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제도개선, 황정아 위원 징계가 있는데 황정아 위원께서 징계 건을 철회했음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해 주신 대로 첫 번째 건은 시정, 두 번째 건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식 위원 지금 황정아 위원님이 징계 이걸 철회했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민주당 예결위 위원님들도 철회한 겁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서면질의는 황정아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황정아 위원께서 철회하시면……

○김대식 위원 철회하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것에 따라가는 겁니까?

○이소영 위원 민주당은 여기에 물어보셔야지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상임위의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7쪽입니다.

87쪽, 연번 2번입니다.

AI 지원 사업 총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AI 지원 예산 배분의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인데 차지호 위원께서 이 또한 철회했음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철회했다고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차지호 위원님 혼자서 지금 이걸 제기했다가 철회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 거겠네?

○전문위원 정대영 저희도 지금 회의 전에 알아 가지고요. 그래서 삭제는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삭제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대영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8쪽입니다.

연번 3번 총액대상 전과정책국 기본경비입니다.

제4이동통신 선정 및 취소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선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부처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2차관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김승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행정실에도 보내 드렸고요. 또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도 지금은 ‘전파법 및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른쪽 자료에 보시는 대로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매 제도를 개선할 것’ 이 문구대로 의원실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로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거는 전문위원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아닙니다. 저한테는 보고 없었고 다만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구가 어디…… 안 나와 있는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밑에 있는 거……

○임미애 위원 ‘전파법 및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 이거를 빼 달라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죄송합니다. 의원실에는 어제 밤늦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실에 설명이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김승원 위원이 제도개선으로 바꿔 줬다는 건 2차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걸 전제로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제기한 위원께서 동의하셨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뒤에 문구 수정에, ‘전파법 및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 이걸 빼고 뒤 문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경매 제도를 개선할 것’ 이런 문구에 대해서 의원실과……

○김대식 위원 경매 제도를 개선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매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의원실에 보고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질문인데요. 경매 제도를 개선하면 경매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고 그 특성 때문에 이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경매 제도 설계상 기본적으로 전파법에 따른 범죄 경력이나 일부 경매 참여 조건을 제한하는 허들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업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문제된 사업자가 그런 범죄 경력이나 현재의 기준에는 합당했으나 실제로 사업수행 역량이 갖춰졌는지를 경매 참여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좀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제도개선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 설명드리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빼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경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일부 고시 수준의, 전파법 이런 법을 개정할 사안이 아닌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일부 법령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 있는 것과 안 들어 있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전파법 및 관계 법령 개정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수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대식 위원 일부니까,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 나중에 개정하려고 하면 또 법적 근거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대로 이것 놔두고 수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문구는 그러면 그대로 수용하고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0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선급금 전액 지급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상에 원활한 공사 진행 등 예외적으로 100%까지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은 돼 있고요. 그 근거를 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분류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바람직하고 한데 선급금 100%를 지불해도 좋아요, 왜 그런냐면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간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교수들·연구자들의 이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다 지불했고. 어떻게 그것을 체크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 사항,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까만 단계평가와 연차점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단계평가를 하는데 일단 선급금을 100% 지급했잖아요. 100% 지급하고 나서 중간에 어떤 사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부 이탈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회수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나중에 그것을 정산하거나 감사를 해서요 참여 제한이라든지 환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100% 다 안 주고요 현재 제안해 주신 대로 70% 정도를 선급금으로 주는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의견을 낸 위원이고요. 오늘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요구유형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열어 놓고 판단을 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없이 지급했다라는 그 발언과 그 인식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관리지침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고금 관리법에는 선급금 다 주지 말라고 해 놔는데 왜 관리지침이 마음대로 100% 다 줄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다 주면 뭔가 의지를 북돋우고 기분 좋게 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공적인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미리 다 줍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혹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모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선급이란 규정이 있고 거기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할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따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저도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계속 이렇게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면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내부적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적이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가 이것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규모에 대해서 100%를 줬 왔던 것이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작아서 그냥 한 번에 다 가져가라 이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도 있고 약간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아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모법인 국고금 관리법에 시행령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법에

도 근거가 있나요?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선급과 개산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조항에 시행령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법 몇 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법 26조입니다.

○노종면 위원 아무튼 저는 시정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규정을 제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 연번 12번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정요구 유형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다 주의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부처 의견은, 시정요구사항 주의를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 재정을 낭비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 부분 문구만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게 사업은 추진 못 했는데 사람은 있으니까 인건비는 썼다 이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인건비만 계상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것은 좀 사업 추진상……

○조정훈 위원 법적인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다면 그것 안 해도 또 불법이 됐을 테니 이것은 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일단 문구를 그러면 어떻게 정정을 하지요, 이것을 삭제하면

말이 안 되는데?

○**조정훈 위원** 대안 문구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있습니다.

문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위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요 ‘과기정통부는 사업 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사업 진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조금 문장을 다듬어 보세요. 그것 좀 문장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취지로 문장을 다시 다듬어서……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과기부랑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연번 15번입니다.

펀드사업인데요, 이것은 어제 특허청하고 국토부 할 때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보류시키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또한……

○**이소영 위원** 잠깐만요 이게 나온 김에, 어제 반복해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이 어제 두 번 안전이 나왔었고 오늘도 보니까 행안부 안전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펀드의 단계적인 집행 부족 이 부분도 어제 2건이 나왔는데 오늘도 과기부에 보니까 2건이 있고 다른 데도 비슷한 취지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안전은 일괄 보류해 가지고 한꺼번에 통일성 있게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에 있는 연번 17번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견이 있는 두 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간단한 문구 조정 두 건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연번 82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한 현행 수준의 예산 유지 필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 규모를 확정적으로 결산심사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정 문구는, 이게 지금 시도 자율 편성으로 전환이 돼서 지자체에 혹시라도 예산이, 시도에서 충분히 반영 안 할까 걱정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적정 규모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집행 실적과 적정 투자 여부를 모니터링 및 평가할 것’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완전 다른 의미인데, 이 의미가 어느 정도 담기도록 해야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이 의미가 담긴 겁니다. 적정 규모가 투자될 수 있

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집행 실적과 적정 투자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소위원장 박형수 간단하지 않은 것을 자꾸 간단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게 뭐가 간단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문구구먼?

다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보시지요.

○조정훈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한 취지는 이 사업이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간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지역 격차가 심해지거나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심어 놓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거지요,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결국 회계 전환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지역 격차가 심해질 경우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인데 기재부차관님의 발언을 수용하면 그것이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최소한 현행 수준의 예산을 보장할 수 있는 여기에 사실 정확히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 이거는 지방 자율성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금 중앙 정부가 쥐고 하던 것을 지방 자율로 넘겨 놓은 상황인데 그거를 다시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겁니다. 최대한 지방 자율 편성하더라도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지역자율계정으로 돌렸을 때 지역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역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지역자율계정을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취지를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래서 26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여기에 실제로 시도 자율 편성으로 바뀌 놓으면 시도에서 적게 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건데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실제로 저희가 시도, 쪽 이렇게 반영한 걸 취합해 봤더니 25년도에는 과기부가 들고 했을 때 33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도에 돌려 봤더니 26년도 예산안에 36억이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3억이 늘었다는 소리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이라는 표현 대신 ‘지역 격차가 심해질 경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 뭐 이 정도 하시면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문구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적정 규모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기 문장은 불편부당한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질 경우 대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대안을 적극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 정도……

○김대식 위원 그래요.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시정 유형이 주의를 받았는데 주의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위법함과 부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겁니까, 이게?

○이소영 위원 삭감된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지적 사항은,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으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왜 주의를 수용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수용하셨으니……

○임미애 위원 수용한다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김대식 위원 수용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는 기재부,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수용하는 부분을……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조정훈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형수 상임위에서 한 것이 적정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수정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이기도 해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아마 추정키로는 여기 보면 예산이 24% 삭감돼서 이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된 게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도 녹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조정훈 위원 그거는 결산 사항이 아니거든요. 결산은 예산을 집행 안 했으면 혼나는 거지, 예산을 적게 썼다고 결산에서 혼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산할 때 지적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불용했으면 혼나야 되지만 이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적은 건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조정훈 위원 쓴 건 다 쓴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100%……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결산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견……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주의 하기에는 적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제도개선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강력하게 제도개선 하자고 그래야지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100쪽, 연번 15번 관련해서 보류하신 펀드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 부분은 보류해서 따로 논의하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지적 사항이 23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 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기호 의원님실에 설명을 드려서 그 징계 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됐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들은 의원실에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관련된 시정 조치 미실시 관련된 관련자 징계 부분하고 시정요구 유형의 징계 부분은 철회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보류된 안건을 논의할 때 그것도 참고해서,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저희 간단한 문구 수정이 또 하나 있는데, 77페이지입니다.

○임미애 위원 간단하다면서 기재부가 맨날 더 오래 걸려요.

○이소영 위원 몇 페이지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77페이지입니다.

R&D 예산 삭감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여기 100%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국가 총지출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의 5% 이상’ 이거를, 예산 규모를 사전적으로 확정하는 게 뭐한 것 같아서요 취지를 100% 반영하되 문구를 조금만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구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분별한 R&D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R&D 예산심의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이 부분만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관련된 수식어는 이게 예산 확대라기보다는 시스템 마련, 무슨 전문가 중심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 수식어의 위치를 뒤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정훈 위원 이거 민주당에서 총지출의 5% 이상 R&D 예산 투입할 결심이 서셨으면 가는 거고 아니고 검토 중이시면……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은 어느, 몇 퍼센트쯤 돼요, R&D 예산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은 25년도에 4.4%고요. 26년도에 4.8%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비슷하네.

○임미애 위원 기재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정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노종면 위원** 아니요, 저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예, 말씀……

○**노종면 위원** 개인적인 입장은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상임위에서 5% 이상 법 개정 의지를 여기에 반영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도 상임위의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걸 보류하는데 이걸 굳이 살리겠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 정도로 하면 이 의미도 살릴 수 있고 기재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여튼 보류해 놓고 다시 상임위하고 논의해 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노종면 위원** 다른 사항은 논의 끝났으면…… 끝났지요, 다른 것은?

아까 보류하셨던,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조정훈 위원** 몇 페이지지요, 그게?

○**노종면 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여쭙볼게요.

아까 선급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조정훈 위원** 아닌데요, 100페이지가 아닌데.

○**김대식 위원** 100페이지는 펀드사업.

○**노종면 위원** 9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근거 규정을 시행령 몇 조라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40조입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그 시행령 40조까지 다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법을 지나 과기부나 둘 중의 한쪽은 오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 4조는 적절할 때 지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미리 주지 말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26조에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때 선급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비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리 주는 것을, 이 선급이 또 100% 선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40조 1항에 열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 또는 공사 이런 유형을 40조 1항 15호에 아예 유형으로 딱 적시를 해 놓았어요, 공사·제조·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때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시행령에는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비교 검토한 다른 기관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어떤 기관도 이런 지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단, 한국연구재단이 유독, 최근 3년간 선지급 내역을 봤더니 전체 건수의 80% 이상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수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노종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 김영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성종원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12쪽 연번 2번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EBS의 UHD 방송 장기 미송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시정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가 상임위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우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제도 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방통위가 그간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왔고 현재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UHD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조정훈 위원 그게 원칙이었으니까,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15쪽입니다.

115쪽 연번 4번 기획조정관 경비입니다.

동 경비에 대해서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김재원·황정아 위원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우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행정청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국가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방위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것도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의견대로 가시지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하나만 좀, 내가 법에 대해서는…… 이게 형사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행정소송입니다.

○김대식 위원 행정소송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제기 안 했고요, 두 분 위원이 징계를 요청한 사안이네요.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거거든요.

○노종면 위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시정요구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삭제하시면……

○소위원장 박형수 아, 똑같네요?

○김대식 위원 예, 똑같아요.

○조정훈 위원 상임위대로 가시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래서 삭제하시면……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그러면 상임위대로 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16쪽 연번 5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동그라미가 4개 있는데 첫 번째·두 번째 동그라미가 징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우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보조금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를 한 것을 사유로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피처분기관의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방통위 입장은 어떻게 바뀌 달라는 건지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김대식 위원 주의로 해 달라.

○노종면 위원 주의로 낮춰 달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렇게 여러 당이 공통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상임위는 징계로 온 거예요?

○노종면 위원 예, 상임위에서도 징계로 의결했구요. 한기호 위원님 그다음에 서왕진 위원님.

○이소영 위원 천하람 위원도 내용은 징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이네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의 징계 내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노종면 위원 첫 번째는 관리·감독 부실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인데 같은 건인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같은 건인데 상임위하고 서왕진 위원이 징계를 한 거는 지적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고요.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이 징계를 하신 거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여기도 책임자인데? ‘태만한 책임자에 대하여’인데?

○김대식 위원 불용인데? 똑같이 불용인데?

○소위원장 박형수 그건 담당 공무원.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사업을 불용했고 그 불용한 내용을 보니까 부당 지정했고 부당 이전했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다 적발됐고—감사원에 의해서—보조금 환수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처분이라는 쟁점이 붙어서 지금 쟁송 중이라는 거지요?

쟁송 중이십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제재부과금 관련해서는 피처분기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한 책임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이라는 이 ‘담당 공무원’은 그 사업을 선정한 공무원을 의미하니까, 아니면 회수 조치를 부실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의미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회수 조치를 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가 한기호 위원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두 번째가 상임위의 징계 사항입니다.

○조정훈 위원 바뀌었다고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게 같은 징계인데 같은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역할로 봐서는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은 사람인 건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내용상으로는 다른 사람인 거지요, 지금?

○전문위원 정대영 다른 사람입니다.

○임미애 위원 각각 징계가 들어가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노종면 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첫 번째 동그라미는 팩트체크 사업을 처음 진행했을 때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최근에 저희가 피처분기관에 대해서 제재부과금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제재부과금 부과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릅니다.

○조정훈 위원 상임위가 동의하고 과기정통부도 동의한 건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관련 공무원 징계는 동의하신 거지요,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상임위는 그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조정훈 위원 상임위가 제재부과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분을 징계하라는 것을 동의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예, 그게 상임위죠.

○조정훈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선정하면서 선정 과정에 참여한 그 공무원, 관리 책임을 맡고 한 공무원도 징계하라는 게 한기호·김기웅·천하람 위원님 등의 징계 요구, 주의 요구라는 거지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 위원으로서 의견인데 정말 정책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공직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안 했어야 될 일을 했다는지 이런 거는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부수의견을 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방통위 사무처에서 판단할 때 이 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이분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가 있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회제도는 일반 부처와 달리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냐 여기서 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분

들은 위원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공무원들이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이 안이 좀 민감한 것 같아서 사전에 과방위의 의견을 들었고요. 주의로 완화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전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다.

○김대식 위원 시정을?

○노종면 위원 예. 그런 전제가 있다면 주의 조치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임미애 위원 징계가 아니고요?

○노종면 위원 예.

○김대식 위원 징계가 아니고 주의로?

○노종면 위원 예, 주의로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게 상임위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양당 간사 모두 동의하신 거지요?

○노종면 위원 아니요. 간사님은 못 들었어요, 제가 급하게 물어서. 위원장하고 소위 위원장하고……

○조정훈 위원 이것 보류하시지요, 일단.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건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좀 더 상임위하고도 확인해 보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노종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중에 나온 것은 이 담당 공무원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회 의결 내지는 그 사업의 결정에 의해서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맞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팩트체크 활성화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조금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법에 따라서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무원이 어떤 개인적인,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이건 보류하고 다음 또 진행하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119쪽입니다.

119쪽, 연번 2번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외조사 예산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500만 원이네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부터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여비가 미집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OTT 관련 규제 동향, 유무선 결합상품 해외규제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 수준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제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방통위 입장 이해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주의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종면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0쪽입니다.

연번 3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부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우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와 방송사의 방송 편성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방송 편성의 사전 확정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과거 편성 내역, 외부 편성영향요인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제작 편수 및 단가를 세분화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게 매년 당초 계획된 게 있잖아요. 계획대로 이게 뭔가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뭔가 좀 고쳐야 될 것,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러면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관행적이야. 잘못하면 작년에 봤던 그 자료가 올해 똑같아, 토씨도 안 틀리고.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특히 교육방송 이런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아, 이런 부분이 올해 좀 부족했다’ 한다면 내년엔 뭔가 진보적인 그걸로 나가야지 항상 제자리걸음 하면 무슨 교육에 효율성이 있겠어요, 교육방송이라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 기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예산 할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십

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기재부에서 의견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간단한 문구 수정이 하나……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5번, 기금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방통위인데요. 이 안에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 사업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는 이유는 뭐냐? 방송통신발전기금 근거법에 보면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하고 부가서비스 개발하는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이것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데 너희들 방 빼서 나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이 문구만 삭제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 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김대식 위원 부처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아닌데요?

○김대식 위원 기재부.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부처 의견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도 재정 당국 입장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한 가지, 그 외에 또 하나……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이것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것’ 이렇게……

○김대식 위원 적극 협의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가 어제, 오늘 하면서 처음으로 변상 요구를 하나 봐서요. 제가 넘기다가 눈에 띄었고요.

117페이지입니다.

그냥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류희림 전 방통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해외출장비를 변상하라 이 얘기인데요. 목적은 이런 거였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출장비를 변상하는 건데, 과연 우리 공무출장 가서 공무출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출장비를 변상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출장 또는 출장보고서와 다른 일정을 했다 이것은 징계감이겠지요. 그런데 구글 사장·부사장, 유튜브 담당자 했는데 협약을 만들지 못했고 언성을 높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출장이다라고 해서 이걸 변상하라?

기재부차관님, 이런 게 있습니까, 공무출장 규정 등등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규정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출장지침에 이런 경우에 변상하라는 조항 자체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변상 이것은 국외공무출장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변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해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성과 없는 출장비용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과 없는 공무가 한두 개겠습니까, 솔직히.

○**김대식 위원** 대통령 해외출장 가서 성과가 안 되면……

○**노종면 위원** 전제에서 오해가 있어요. 이 사안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출장의 목적 자체가 유튜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방심위가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사장 만났다고 돼 있지요?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유튜브 관계자 만난 것으로 알고 계신데 못 만났어요. 아예 일정이 없었어요. 이 부사장은 그냥 광고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허위로 했다는 거예요?

○**노종면 위원** 목적도 허위였고 그리고 이후에 성과 없는…… 당연히 그렇지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성과가 안 났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출장비를 회수하겠습니까. 아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였다고 주장하고, 유튜브 관계자를 만나서 호통을 쳤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호통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책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 그걸 포장해서 국내 언론에 언론 홍보활동을 하고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과장된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이례적인 변상조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상임위를 존중하고요 또 방통위가 수용을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다는 짐작은 하는데 말씀 들어 보면 주의, 징계, 시정,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무출장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이 이 직책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아니었던 것 같

고. 그런데 출장을 나갈 때 특정 인물을 만나려고 하는데 미팅이 확정돼서 나가는 경우에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그렇고.

○**노종면 위원** 그럴 수는 있지요.

○**조정훈 위원** 또는 그 사람과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그 정도 상태에서도 출장을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장의 성격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하면 안 될 내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국가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돈을 낭비하겠다는 이런 의도성이 없다면 시정요구사항 유형은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한번……

제가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님, 우리가 국가의 출장비용을 변상 요구해서 받아 낸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좀 예외적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외적입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예결위니까 이것은 규정에 맞는 걸 해야 되는…… 아까도 주의·시정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바꾸었잖아요, 왜냐하면 위법 부당한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예산 배정의 문제고.

정치적인 논쟁 하자는 게 아닙니다, 노 위원님.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가?

○**노종면 위원** 결국 핵심은 업무 범위에 맞는 출장을 했으면 성과가 안 나도 그것은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로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고의성이 있었다?

○**노종면 위원** 고의성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에릭슨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방심위 업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출장을 왜 갔냐라는 부분이에요. 2800만 원, 29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일단 여기부터 제가 추정을 좀 보태겠습니다. 유튜브 관계자를 누구든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행보를 보면 제 추정이 그럴 법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텐데 구글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치를, 유해 정보 차단 요구를 수용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없는 업무영역이 아예 다른 분이에요. 그걸 모르고 가서 만났다면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출장보고서를 고의로 작성했다 그러면 이것은 변상 대상에 해당됩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성과를 부풀려서 보고하면 그것을 확인해 보고 ‘너는 고의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면 그게 변상 대상이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성과를 징계하는 과정에서는 법과 제도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전문위원, 일단 출장 관련해서 변상 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됩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지금은 확인 안 되고요. 아무튼 이걸 이례적입니다. 보통 변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과다 지급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자행된 사건에 대해서 변상을 받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례적입니다.

○**김대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안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만나려고 갔는데 그쪽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취소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의로 모든 것들을 했는데 결과가, 성과가 없었다면 사실 이것은 변상 조치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하거나 허위거나 이렇게 보지 않을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튜브로부터 유해 게시물들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성희 위원** 저도 한말씀 못 한 것……

마컴 에릭슨 부사장이 일단 해당 분야가 아니고 AI 담당이라서,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과방위에다가 직접 편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유튜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는 방심위에 협조를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출장의 전제부터도 틀렸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돌아온 걸 가지고 변상해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아예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서 방심위와 상관없는 논의를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마컴 에릭슨 부사장이 한국에 공문을 보내서 ‘나는 그 사람하고 방심위 협조를 한 적도 없고 유튜브 담당도 아니다’라고 해 버렸으면 이 출장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도 뭐가 없는 출장이었던 거지요. 그런데다가 보도자료까지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과방위에서 변상으로 징계한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기록에는 그렇게 남겨 놓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자료를 보면서 변상이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있길래 이게 부처가 수용한 게 맞느냐라고 재차 사전에도 확인을 해 봤었는데……

○**조정훈 위원** 수용했나요?

○**이소영 위원** 부처가 수용을 했고……

○**조정훈 위원** 수용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희는 수용을 했고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과방위에서 수용을 했는데 여기서 할 것 뭐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저걸 했다고요?

○**김대식 위원** 했다는데요.

○**조정훈 위원** 이것을 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야 합의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예산결산 의결할 때 국민의힘 배석 안 했지요?

○**김대식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소위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소위에는 들어오셨고 전체회의 할 때……

○**조정훈 위원** 소위에서는 합의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대식 위원 소위에서 합의했습니까?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합의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는……

○조정훈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니까 이게 제도에 맞아야 되는 데,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출장의 성과를 허위로 보고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감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징계의 방식이 출장비를 토해 내라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지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종면 위원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지침은 정부에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나요? 이런 것은 누가 유권해석합니까? 해외 출장과 관련된 그…… 행안부가 합니까, 공무원이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인사혁신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인사혁신처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무원의 징계나 이런 것 관련된 건 인사혁신처가 총괄하고 있어서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인사혁신처에 한번 물어볼까요, 이따가 예산 올 때?

○이소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위법 부당한 공무집행이 만약에 있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예산 지출이 낭비됐다거나 손해가 누군가한테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상 책임이 있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게 위법 부당한 공무집행이냐 여부가 판단의 대상일 것 같고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변상의 유형이 있는 것도 그런 경우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위법 부당한 공무수행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방위원은 아니지만 아마도 과방위에서 이 문제가 작년부터 많이 제기됐던 걸로 검색해 봐도 나오고 과방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루시면서, 제가 말씀 나누시는 동안 검색을 해 보니까 단순히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을 업무 협조를 위해서 요청하러 만났는데 책상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다거나 이런 과정들까지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것은 좀 이례적이지만, 예외적이지만 이런 유형의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만약에 상임위에서 모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나 아주 정쟁적인 논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지금 방통위원장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시지요, 기관장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쭉 지금까지의 상임위의 흐름에서 상임위 의결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기관에서 수용까지 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내용이 없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또 얘기하실 건가요? 너무 길게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

면 이것 일단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다들 하시겠지만 변상이라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거의 없더라면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출장 자체가 위법 부당한 목적이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관계부터 따져 봐야 되고 사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세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28쪽입니다.

128쪽, 연번 1번입니다.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대상 공무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저희는 시정요구의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가 이 법령과 매뉴얼상에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착수를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원자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참 고생이 많으신데 2023년도에 종료된 R&D 과제 있잖아요. 26건이 왜 이렇게 정산 절차가 1건도 완료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 연구해 와서 그렇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통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바로 시정을 하는 걸로, 올해 10월이면 다 끝납니다.

○김대식 위원 오케이,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조정훈 위원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걸 노종면 위원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조정훈 위원 꼭 바꿀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미비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지켰던 거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게 아니고요. 다만 저희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에 여성가족부 이런 부처들이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져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일괄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이 상황이 좀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황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현장지휘센터 파견이 불필요한 부처는 시행령에서 삭제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종면 위원 법령 위반에 동의를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화가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법은 파견하라고 하고 있고요, 안 된 부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 위반이 아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아니요, 저희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노종면 위원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개정할 필요가……

○노종면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과기정통부는 뺄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과기정통부의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연구로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기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국회의 시정요구 유형에 보시면, 사실 저희는 시정보다는 주의에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정의 경우에는 추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시정요구 유형의 분류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주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저는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따를 생각인데,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모두에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고 또 여가부 얘기하면서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 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면 개정해야 되지요.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런 의견을 원안위가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개정을 하더라도 뺄 수 없는 부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우회하시려고 안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렇게 오해하시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참여해야 되는 연구로가 있는 대전의 현장지휘센터에는 과기부가 참여하고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게 부처들이지요? 부처가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챙겨 가지고 지정하도록 통보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했다 이런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저희가 좀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아까 정부 부처 관계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시정을 하려고 그러면 추징이나 회수, 원상회복,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이런 조치가 수반돼야 되는데 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종면 위원님 어떻게……

○노종면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우주항공청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우주항공청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우주항공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오전에 국무조정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 김영수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경제·인문사회 사무총장 장영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74쪽, 연번 3번입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조직 신설 시 유사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견까지는 아니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어차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되 앞의 동그라미로 그냥 통일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예산 낭비를 지적한 거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이고 상근 인력보다는 비상임, 이게 모두 다……

○조정훈 위원 비슷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래서 상근인력보다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탄력적 운영 방식이라서 내용은……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일반적인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한 것인데요.

○노종면 위원 이것 자체가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형수 규제혁신추진단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에 향후 조직 구성 시에 이걸 반영하라는 취지인데……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규제혁신추진단입니다, 이 사업 항목 자체가.

○임미애 위원 예, 추진단이 모두 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겹친다고.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통합해 가지고 같이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75쪽, 연번 5번입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임시조직 운영 시 기존 회의장 우선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 건은 상임위에서는 주의로 됐고 결산위원회에서는 박희승 위원께서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는 주의로 해서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더 중한 걸 받겠다고 그러시네.

○이소영 위원 상임위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상임위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끝나기 전에 내가 하나 조금……

사무총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금 25개 기관입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25개에 소속기관 해서 26개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 25개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한 1조 정도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그 정도 됩니다. 500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5000억이고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한 1조쯤 됩니다, 전체 예산은.

○김대식 위원 1조 정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국가보훈부까지만 합시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견이 없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입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기초실장 김주용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국가보훈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20페이지에……

○김대식 위원 없다며 220페이지에 감사 의견 있네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감사요구가 있는데 이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류해서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김대식 위원 보류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논의하겠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어제도 감사요구안을 보류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 의견이 한 건 있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소영 위원 논의 보류?

○김대식 위원 논의 보류.

○노종면 위원 여기에 대한 기관 입장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것도 나중에 감사원 의견까지 청취해서 다 같이 듣기로 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때는 기재부가 다 취합해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정대영 의견은…… 지금 부처 분들이십니다.

○노종면 위원 굳이 나오셨는데 안 들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감사 논의할 때 기재부가 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때 나오기로 했어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영 기재부가 다 통합해서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제.

○김대식 위원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부처가 그날 참석하냐고요, 기재부가 통합하고.

○전문위원 정대영 참석 안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오신 김에 부처 의견이 어떤지 들어 보자는 그 얘기인데.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현재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국민감사청구도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저희 부처는 동의를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보류해서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조소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 양종삼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229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주의를 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박희승 위원께서 제도개선 했는데 두 내용이 유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는 일단 동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바꿔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이유로는……

○김대식 위원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바꿔 달라요?

○김성희 위원 상임위가 주의입니다.

○김대식 위원 상임위가 주의.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주의를 받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게 두 번째 것도 주의로 해 달라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합쳐서 한꺼번에 주의로 해 달라 그런 취지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두 번째 것을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소영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둘 다……

○노종면 위원 이것을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소영 위원 그냥 일단 뒤엎것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똑같은데요. 뒤엎것을 없애 버리면 되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주의로 하면 안 되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두 번째 것은 없애고 앞에 주의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참여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것도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셨던 것처럼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바꾸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30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주의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징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일단 주신 말씀에는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두 번째 징계 사안 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 사항이 사실은 23년 9월에 국조실에서 전 부처에 2030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 주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저희가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비

가 있었거든요. 이것과 2030자문단 운영사업이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기존의 사업비로 운영을 해라라는 어떤 실무자 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주의로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다른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영 예, 세목 사례는 같습니다만……

○소위원장 박형수 세목 조정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건데.

○전문위원 정대영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하나는 주의고 하나는 징계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징계를 주의로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이소영 간사님 그건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철두철미하게 그걸 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소영 간사님이 양해하시면 주의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이소영 간사님 어떠신가요?

○이소영 위원 이것 상임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강하게 받으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래서 설명을, 이게 사안이 여러 가지가 얹여 있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부처 의견은 알겠고요. 이것은 보류하고 부처 의견 고려해 가지고 조금 더 숙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하지요.

세목 조정을 임의로 한 것에 대해 갖고 지적하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아예 세목 조정을 할 때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대부분 아마 다 거쳤습니다. 거쳤지만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많은 지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새로운 비목, 그러니까 전용한 그 예산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예산에 전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소영 간사님 의견대로……

○김대식 위원 이게 실무자하고 기재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을 한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 당시에 기존의 사업비와 유사성이 있는 것이라면 신규 편성 안 되고 기존의 것을 운용해라라고 지침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사실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잠깐만요.

이 건 관련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도 동일한 취지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무력화하지 않도록, 이것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결산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해서 이 지적을 다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이게 23년도에 들어간 건데, 이게 아마 다른 내용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다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지금 비슷한 업무 처리가 반복돼서……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2023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를 잘 처리했는지 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해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번에 지금 이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발견이 돼 가지고 주의가 아니라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낸 건데, 그냥 단순히 세목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반복된 게 핵심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위원님, 기초실장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비목 조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심의해 주신 그 사항을 벗어난 거라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비목 조정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른 항목으로 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약간 특수한 게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그 비슷한 사업으로 그냥 바뀌어서 하면 된다는 국조실의 지침과 기재부 실무자들과의 유선 협의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당연히 그냥 허락이 된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는 정말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이번만 좀…… 젊은 실무자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잘해 보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도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게 세목 조정을 했는데 세목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사례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상의하셨고.

기재부도 이 세목 조정이 법과 제도와 규정에 허용된 세목 조정이라고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세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항목이 있고요. 아니면 부처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항목이 있는데 방금 권익위원회에서 설명 주신 거에 따르면 이거는 원래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구두로 얘기했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굳이 편을 들어 드리면 이게 법과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또 한 걸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구두로 상의까지 하신 거고……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물론 세목 조정이라는 게 예결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한 행위는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 그다음에 어느 상황에서는 세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열어 주고 이거를 한 거를 징계하는 게 맞을까요? 규칙을 어긴 게 없지 않습

니까, 지금.

○소위원장 박형수 징계하는 게 맞는지 보류해 놓고 다시 따져 봅시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하여튼 충분하게 설명을 이소영 간사님한테 드리고. 그건 일단 좀 빼 놓고 합시다.

○소위원장 박형수 예,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해 놓고 부처 의견도 충분히 개진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31쪽, 청령교육및의식확산인데 이것도 연번 3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다음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이해관계 점검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어서 이 두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것도 당연히 주신 말씀에는 저희가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바대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길 청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것과 같아야지 지금 하신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인데.

○조정훈 위원 첫 번째 거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첫 번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걸 얘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아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제도개선으로 말씀……

○김대식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대식 위원 사무처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가 사실은 첫 번째 동그라미는 그냥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것도 사실은 주의로 받아도……

○조정훈 위원 이거는 주의가 맞지요, 차관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무언가 제도를 바꾸겠다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제도를 쓸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정훈 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두 번째 내용이 저희가 있는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고 인지를 해서 담당자가 그 인지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신고된 바가 없어서 그것을 담당할 관련자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관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법령이 갖추어지면 저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부분이 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하면……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인지사건이 아니고 신고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담당자가 없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가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라고 할까요? 인지한 것까지도 책임을 질 거냐……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담당자를 선정하고 뭐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현행 법제하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면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점검체계를 강화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된 것만 처리한다면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그러면 점검해서 누구한테 대신 고발하게 하는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형수 인지할 수 있는 그게 없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텐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거나 이런,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고 사전적인 부분들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해서 문제가 있을 만한 관계 공무원한테 경고를 한다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떤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런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공직자분들을 그렇게 제한 없이 모니터링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점검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닌가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할 수가 없다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일도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걸로 우리한테 주의를 주느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구조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할 수가 없지요.

○김성희 위원 그리고 거꾸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하면 국민권익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되는 결과를, 즉 공직자들을 다 사찰하고 다니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두 번째 주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맞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렇게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아닌데 주의를 받는 것도 맞지 않고 이 일을 우리한테 맡기는 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인 거고 국민권익위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못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두 번째는 부여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좀 오해에서 기인됐다고 하면 이것은 삭제를 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신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 보면서 ‘주식 얼마 갖고 있으면 내 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권한인데 지금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도개선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일단 첫 번째 것부터 결정합시다.

첫 번째 것은……

○조정훈 위원 상임위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지요. 상임위의 의견이 제도개선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으니까……

○김대식 위원 제도개선은 받았으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합시다.

두 번째 것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삭제해 달라는 취지다 그 말씀이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감히 삭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삭제를 하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게 아니구나. 우리 위원님이……

○김성희 위원 부여된 책무가 아닌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이게, 어때세요? 제도적인 무엇을 마련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인데 배우자가 이 주식을 어떻게 했다……

○이소영 위원 이것은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건복지위를 잠시 거쳐 온 입장에서 이 사안을 인사청문회 때 다뤘던 당사자고요.

코로나19 때 주식을 취득했던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취득하고 있었던 소주 주정을 만

드는 회사가 코로나 시기에, 그 당시에 소주 주정을 만드는 회사들이 법인등기부 사업 목적에 손소독제 생산을 추가한 회사들이 다른 곳들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게 영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목적에 그게 추가가 됐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사업 목적이 추가된 것을 질병관리청장은 알기 어려웠던 거고……

○**김대식 위원** 남편이 한 거니까?

○**이소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신규로 취득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게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된 것과 전혀 다르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심사도 받았던 주식이다, 1년에 한 번씩 받았던 주식이다라고 하는 게 소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나 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소명·검토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업무도 국민권익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혁신처에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기초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일반적으로 공직기강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지만 행동강령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요.

○**조정훈 위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1년 만에 한 번씩 검사하는 역할도 있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예, 검토합니다. 저희들도 검토……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일이 년 간 게 아닌데 질병관리청장 가족의 그 주식의 업무 영역을 변환해서, 특정 주식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뭐랄까, 판단·검토에 실패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인데요. 그게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30% 이상을 보유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보유했는가,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정은경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데 30%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기록에 남겼습니까, 아니면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결국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루는 거지 권익위에서 개별……

○**조정훈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거냐고.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그러니까 재산등록을 하고 재산변동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인사혁신처에서 관리를……

○**김대식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지.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그렇습니다. 각 기관에서 그런 점검을 하면서 그냥 위반사항 있느냐……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 권한이 있는 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예, 그런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잠깐만.

회의가 이렇게 진행 안 됐는데 갑자기 무질서해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그것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조정훈 위원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해서 보류할 걸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의견은 보류시고.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노종면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이해충돌 기준이 30%라 그랬는데 퍼센트가 맞아요? 몇 천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식……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주식, 주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3000만 원이 넘 어가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30%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러면 더 자세히……

○조정훈 위원 그 내용도 모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아니, 그게 아니구요……

○노종면 위원 30%면 대주주 아니에요, 대주주?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민성심 총주식액의 30% 이상을 소유를 하면 사적 이해관계자로 되고요. 그리고 그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때 그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노종면 위원 회사 주식의 30%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민성심 예. 그러면 그 회사와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그 회사가 국가와 용역이라든가 여러 직무관련자가 될 때 그때는 회피를 해야 되는……

○노종면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기준은 뭐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민성심 그건 공직자 재산등록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요……

○노종면 위원 그게 30%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민성심 본인 또는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5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는데, 주식은 단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신고는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5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업무와 제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점영영영영영영영영 몇 퍼센트의 지분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라고 보고, 예를 들면 3등·4등·5등 주주까지는 이 회사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의율을 하신다는 얘기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직무관련성 심사, 내가 공직자인데 내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내 재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심사고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있어서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랑 이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식,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서 그게 인사청문회장에서 현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어떤 행동강령이라거나 점검 체계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이게 보류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보류 의견이 있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성희 위원** 예.

이것은 보류해서 더 논의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지지 말아야 될 권한을 더 주는 것 말고는 논의가 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권한을 쓰는 게 맞지 여기서 감시를 잘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영장청구권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논의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오해에 기반해서 주의를 주려고 하셨던 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자기들 일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이것을 논의해서 그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면 빼고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부분은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익위원회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받아들이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받아들이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제도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든지 또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권익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이정렬 사무처장 이정렬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개보위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부차관 최은옥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소위 책자 5권입니다.

5권 65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보통교부금,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시정인데,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상임위 시정, 허성무 위원 제도개선이 있어서 2개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시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우리 기관은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의 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77쪽입니다.

77쪽, 연번 3번 보통교부금입니다.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고교무상교육 재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문구는 ‘교육부는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고교무상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분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김대식 위원 차관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분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이미 특례를 제도입을 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시설 계약상 낙찰차액,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어서요 이 재원은 내년도 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입니다. 그래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넣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조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정 문구로 제도개선하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으시니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교육위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 지금 교육위가 두 분이 있고 교육위 소위원장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교육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게 가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1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시정요구 유형 두 가지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월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또 병원장 회의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편성하지 않고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 예산 신청하기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했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교부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여기는 민주당에서 다른 안을 제시한 것은 없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했고 조정훈 간사와 제가 직접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83쪽입니다.

83쪽, 재해보상급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부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시정요구사항 삭제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이 청구한 공무원의 휴업급여 미도입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에서 작년에 기각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각결정의 이유는요 신분보장 정도라든지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질병휴직 기간 동안 받는 보수 수준, 퇴직연금에 의한 생계보장 정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가 기각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하고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휴업급여는 고용안정성이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직종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게 구분되는 적용을 하는 제도라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기재부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주 간단한 건데, 40페이지입니다.

45번 항목인데 외국에 재외한국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립학교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사립학교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국고로 3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 내용이 ‘단계적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저희가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본질적인 성격을 봤을 때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나는 세종학당을 문화부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부는 한류 그것 하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교육적인 측면은 교육에서 토털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중국 보세요, 중국 공자아카데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부하고 교육부하고 양분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셔 보면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에서 충분히 관할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게 국립으로 안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한글을 보급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문화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도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기재부차관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을 강구해라라고 딱 못 박아 놓으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고 현재 지원율이 27.4%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100%로 올리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기재부차관님의 입장을 꽤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재외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적 자녀들이예요. 따라서 헌법정신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국가 내에 살고 있든지 외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국적자 모두에게 의무교육받을 권리가, 의무교육이라는 표현도 이건 의무니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사립초등학교를 다녀도 무료이고 사립중학교를 다녀도 무료지 사립을 가면 돈을 내고 공립을 가면 무료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니까, 시간을 박지는 않았으니까 이 재외한국학교에서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액 지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까지만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이 사치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애국심이 부족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한국인 국적자가 다 아닙니다. 외국인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국 국적이 아니신 재외동포가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액 국비 정도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액 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 정도는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단계적으로 강구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되겠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거는 차관이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양보해 주셨네요, 결과적으로. 뒤에 ‘전액’을 아예 빼 버렸구먼.

○조정훈 위원 아니요,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김대식 위원 단계적으로, 기간을 못 박지는 않았으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오케이,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이소영 위원 동의합니다.

○노종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교육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국가교육위원회 최수진 사무처장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견이 없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1차관 박윤주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차관 김진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47쪽, 연번 1번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별협력 사업의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유형을 상임위, 외통위 결정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주의는 삭제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게 두 가지인데, 동그라미가 두 개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삭제해 달라고 금방 말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삭제가 아니라 주의를 삭제해 달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주의를 위의 것처럼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 그런 취지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사안은 같은 건가요?

○소위원장 박형수 사안이 같은가요?

○노종면 위원 비슷한데……

○전문위원 정대영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관련자 주의 조치’가 있거든요.

○노종면 위원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치 유형이 다른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어떤 건 한 묶음으로 하고 어떤 건 이렇게 갈라놔요?

○전문위원 정대영 저희가 의원실에 물어봐 가지고 이것 합쳐도 되냐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명기해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꼭 명기해 드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는 주의보다는 그냥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그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같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앞것은 애초에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 플러스 관련자에 대한 주의까지 주라는 의미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해서 주의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을 부처 의견처럼 제도개선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저도 여기에 지금 지적을 했는데 차관님, 이것 지금 ODA 자금의 올해 목표가 얼마 지원하고 몇 개국에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전반적인 ODA 사업의 규모는 6.5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6.5조인데 지금 몇 개국 정도 나가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가 90개국에 1600여 개의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이렇게 할 때 ODA 작업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증가할수록 저는 우리 국익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집행을 할 때 너무 관례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선택과 집중을 하든지, 찢끔찢끔 해 가지고는…… 이것 주는 등 마는 등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과하게 지금 지불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나 나라를 하려 하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든지,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일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사실 저희가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면요 외교부 이 무상 ODA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80%, 100%, 그러니까 거의 다가 16.4%에 불과한데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82.9%가 거의 실집행률이 100%에 가깝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지요?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 집행 저조할 걸로 예상되는 것은 줄이고 집행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늘렸다는 의미인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이·전용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외교부 ODA 사업에서 이러한 상황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있던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게 국가별로 하게 되면 다년도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개도국의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23년도에는 4.5조 원 정도 되던 ODA 예산을 24년에는 거의 2조 원 가까이 대폭 증액해 가지고 확 늘렸는데 기존에 이렇게 수혜국 수요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이나 조사·준비가 미흡한 이런 연례적인 행태는 개선이 되지 않고 단순히 예산만 이렇게 늘려서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여전히 16%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지난해부터 중점협력국의 수원국 환경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 예측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반복돼 왔던 거고 단순히 어떤 제도적 미비라기보다는 노력의 부족도 있어 보이고, 특히 결산소위 위원장이신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주의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주의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이 하나,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 대비 실집행률 80~100%, 16.4%. 여기 표에 있는 거 이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현액 대비 실집행률 80~100은 표에는 6.1이고 100% 초과하는 것 합쳐 가지고 82.9%지요. 그러면 위에 16.4도 16.4 플러스 37.4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53.8이 되는데.

외교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말씀하신 대로 더하면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이렇게 수치가 틀렸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결론을 내도 돼요? 16.4%하고 53.8%는 차이가 너무 나는데.

○전문위원 정대영 이걸 금방 조사관 통해서 들어 보니까 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을 서면질의에 그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노종면 위원 물론 이걸 다 하는데 뭐 실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질 때 전체가 맞는지 정도는 적어도 해당 부처는 좀 파악을 하고 검토하고 입장을 주셔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여 가지고.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지적했던 대로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50쪽입니다.

150쪽, 연번 4번입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광고법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시정요구 유형 중에 주의 또는 개선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저희 부에 의견을 문의해 주신다면 가급적 상임위원 외통위 결정대로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52쪽입니다.

152쪽, 연번 6번입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및 기금운용계획 일관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는 주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예결위 위원들께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6번 조속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와 관련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원 외통위 결정대로 주의로 해 주시고 제도개선은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정훈 위원 토론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형수 예.

○조정훈 위원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이게 결국 국제교류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점차 위험 단계까지 가니 기금운용계획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의를 보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의 적용 기준입니다. 그런데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경미할 경우에 주는 게 주의인데 여기 보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더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 안 하나, 조속히 마련 안 했냐 이 지적인데 이것은 차라리 제도개선이 낫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는데 왜 이걸 주의를 줘니까?

상임위가 주의를 줘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아까도 우리가 한번 논의한 것처럼 시정요구 유형이 과연 적절히 적용됐는지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인가.

○조정훈 위원 부 전체가 혼나야지요.

○노종면 위원 저도 조정훈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2개가 같은 취지로 대부분 읽히고요. 저처럼 제도개선을 별도로 요청한 거는 기금 고갈에 대비를 해

달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문구를 수정해서 제도개선으로 한다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처의 의견보다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께서 2개를 합쳐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외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차관 김남중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오대석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91쪽 연번 1번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제도개선인데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아까와 같은 유형의 보조금 사업인가요? 그렇게.

○전문위원 정대영 이건 미반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 가능성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주의, 예결위 위원께서 제도개선, 두 유형을 내 렸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있으신가요? 부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건 상임위 결과인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 하나 궁금해서……

통일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3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경기, 인천, 충남……

○**김대식 위원** 경기하고 충남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지금 인천하고요 호남 목포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권하고 충청권은 올해 완공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5개네.

그러면 부울경 쪽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부울경은 지자체로부터, 이게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아직 부울경 쪽에는 신청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칭으로 몇 % 지원했습니까, 통일부에서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지금 50 대 50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4쪽 연번 4번입니다.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명시 등 사전 검증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동그라미 다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둘 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네요.

위원님들은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통일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관계자들과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문건의국장 박학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장문건의국장 박학민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김종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

영지원담당관 김종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민주평통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입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214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유사사업 사업구조 재정비 및 예산집행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유사사업 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포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업무 수행이라는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사업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 중심으로 통합하여’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지금 제도개선은 받아들이는데 문구 중에서 일부를 수정해 달라 그런 취지이신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문구 수정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소위원장 박형수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 달라고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거기에 보면요 ‘동 사업을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 말을 삭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사업구조를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를 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민주평통에 있을 때 이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 옥타가 있지요. 그리고 세계한상대회가 있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상대회는 매경에서 외교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옥타는 산자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두 군데 다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그다음에 여성부, 세계여성대회 하는 거 좋아요, 우리 여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것도 다 옥타 그 멤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돈 예산은 별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이 걸리니까 이거는 뭔가 한번 통합을 해서 재외동포청이 없을 때, 재외동포재단이 있을 때는 또 이유가 달라요. 동포청이 있으면 동포청에서 전체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재외동포청에서 딱 그림을 잡고 하세요. 해야지 여기에 통합 중심으로 하는 거를 분리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합으로 딱 하고 제도개선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또 분리가 돼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질문 한번 하려고 했어요. 동포청이 딱 중심을 잡고 한번 해 보시라고.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걸 삭제하지 말자는 취지이신가요?

○김대식 위원 저는 지금 동포청이 더 그림을 잡고 하려고 하면 이게 동포청 중심으로 통합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분리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또 그게 원위치돼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문구는 삭제를 건의를 드린 것이,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저희 재외동포청의 산하단체입니다. 산하단체고, 저희 재외동포청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대규모 인원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사업을 위탁을 해서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는 주로 청소년 모국연수, 청소년 한글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재외동포청에서는 초청 연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그리고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대회들은 단순한 청소년 모국연수와 같이 그냥 체험하고 해외 다니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인차세대 리더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그 정책 수요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적절치 않지요. 내가 이런 제안을 안 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지.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력센터 출연 사업 중심으로 통합을 하게 돼 버리면 저희 재외동포청에서 어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하려면 동 사업을 재외동포청 사업 중심으로 통합한

다고 하면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용합니다. 이거는 재외동포청이 생기기 전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을 때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적절치 않아, 이 말은.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오히려 저희 산하단체인데 산하단체 중심으로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동포청 중심으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걸 삭제하고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저 하나 질문이, 그렇게 되면 이 센터에서 하던 차세대육성사업이 이제 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리뷰를 할 텐데요. 지금 협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모국연수 이렇게 와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방으로도 다니고 문화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위탁을 하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재외동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부 기조실장 이영빈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257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기본피복 사업의 미집행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있으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8쪽입니다.

연번 5번,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상임위의 시정하고 최기상 위원의 주의 조치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있으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시정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67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비군사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탄약 사용기한을 고려한 실사격 훈련 강화 및 폐기대상 탄약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요구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정부 의견 수용합니다.

○이소영 위원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74쪽입니다.

연번 12번입니다.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영내자급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징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변경하고 문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문구 수정은 원안의 ‘관계자를 징계하여 계약관리 책임성을 확립할 것’을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여 계약관리 책임성을 확립할 것(시정)’으로 수정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국방부 및 국군체육부대는 불법 하도급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인지한 게 사실인 것으로 인정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인지하고 있고 해당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했고 부정당업체 제재 건의서를 제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징계 사유인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좀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계약 해지는 작년 10월에 바로 이루어졌고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문구는 어떻게 수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여 계약관리 책임성을 확립할 것’, 시정입니다.

○**이소영 위원** 앞부분은 두고 ‘국방부 및 국군체육부대는 불법 하도급 정황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그다음이?

○**국방부차관 이두희** ‘교육 및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여 계약관리 책임성을 확립할 것’, 시정.

○**김대식 위원** 아, 징계가 시정?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하고 문구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77쪽입니다. 연번 15번입니다.

장병여비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질에 맞지 않는 교통비 보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두 동그라미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정요구를 수용하고 일부 문구, 첫 번째 동그라미의 문구를 ‘국방부는 병사들의 실질적인 휴가 횟수에 맞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휴가비를 대폭 인상하거나’ 그 부분을 ‘국방부는’까지는 두고 ‘병사들의’부터 ‘대폭 인상하거나’ 거기까지는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병사들의 실질적인 휴가 횟수에 맞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휴가비를 대폭 인상하거나’까지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그 문구를 삭제 건의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그 뒤의 ‘병사들의 휴가 사용 시 교통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은 살려 놓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것은 살려 둡니다.

○김대식 위원 이 나머지, 앞에는 삭제하자 이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다른’도 삭제해야지 말이 맞지요.

○이소영 위원 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노종면 위원 이게 지금 문제된 게 지금 횡수하고 실제로 휴가 나가는 횡수가 불일치한 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는 수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노종면 위원 거기 보면 교통비 후불 지원을 출타 시 언제든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금액 상승 없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기본적으로 휴가비가 나올 때는 그게 지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가비가 안 나올 때는 언제든지 후급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질문 하나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에?

○노종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비가 지급되는 시점에 휴가 나갈 때는 별 조치가 필요 없고 그런데 오늘 휴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휴가비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교통비 후불 지원을 이미 해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휴가는 휴가비가 나오기 때문에 후불 지원이 필요 없고요, 포상이나 위로휴가 등 휴가비가 나오지 않을 때는 후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뭘 강구를 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저랑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 휴가가 정기휴가가 있고 비정기휴가가 있고요 또 공무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휴가 같은 경우는 휴가비를 주고요. 그리고 비정기휴가 같은 경우는 TMO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장을 갈 때, 공무로 갈 때는 TMO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정기휴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정기휴가를 우리가 9박 10일 정도 인정을 해 주면서 여기의 여비를 카운트해 줄 때 한 번 나갔다가 한 번 들어온 이 교통비를 카운트해 줬는데 실제로 병사들은 9박 10일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2박 3일, 2박 3일, 2박 3일 간다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아, 2박 3일로 쪼개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면 여기 교통비가 6회분이 드는데 2회분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방부는 병사들의 실질적인 휴가 이용에 부합하는 여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러면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이게.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은 나중에 합리적으로 잡아 보도록 하고요. 이게 비용 증가 없이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9박 10일을 한 번에 가면 나갈 때 들어올 때 지원하면 되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비용 증가를 해야 가능하지요.

○**노종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빼려는 목적이 비용 증가는 어려우니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걸로 읽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실은 저 얘기를 기재부가 하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국방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여비를 현실화시켜 주지, 6회분을 계상해 주지 않고 장병들에게 휴가를 ‘당신이 9박 10일 일시에 안 가고 세 번에 나눠 가도 된다, 두 번에 나눠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병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 휴가비를 늘릴 수는 없고 그냥 ‘9박 10일 한 번에 갔다 와’ 이렇게는 안 하실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원래 기본이 9박 10일을 한 번에 가는 것인데……

○**노종면 위원** 한 번에 가는 게 맞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개인의 어떤 가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나눠 가는데 그 매번을 다 휴가비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서 갈 때 한 번은 휴가비를 지급을 하되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정기휴가는—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정요구 자체는 수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안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기재부차관님은 비용 증가가 수반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을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은 아직 어떤 방향은 없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보건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의 경우에는 통상 18개월 동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받고 있고요. 통상은 이병에서 일병,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 시마다 저희가 정기휴가 세 번에 대해서는 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는 TMO,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승진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장병 나라사랑카드를 통해서, 복지 사업을 통해서 10%에서 20% 정도의 모든 철도나 화물 운임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병 일인당 여비로 한 35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대식 위원 얼마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3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복무기간 총?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복무기간 동안.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쪼개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쪼개는 게 사실은 예산 계상상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신세대 장병들한테는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갈 때마다 저희가 운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쪼개 간다라는 게 2박 3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2박 3일 가고 이런다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렇지만 20일 범위 내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20일 동안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돼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사유가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기휴가에다가 각종 위로휴가나 포상휴가를 붙여서 나갑니다. 붙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거는 일주일씩 가는데 그중에 정기휴가 이틀, 위로나 포상휴가 5일,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복잡하게 하시는데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한 건 ‘휴가를 몇 번 가든 가는 휴가마다 교통비 지불해라’라고 상임위가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따르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실무자가 설명 주신 얘기는 35만 원이나 주고 있는데 뭘 더 주냐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러고서 기차 요금을 10%를 깎아 주느니 하지만 지금 국방위의 논의 자체는 ‘나가는 휴가마다 여비를 지급하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시정요구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받아들이겠다는 건지를 정리를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이거는 국방위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천하람 위원의 개인적인……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예산을 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비용이 들기는 엄청 들 것 같긴 하네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거 보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부처에서 얘기한 문구로 정리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기재부2차관이 얘기한 대로 정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쪽으로 문구 정리만 결정하시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문구를 다시 한번 들어 보실래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기재부2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간결하게 그 두 쪽 지 다를 ‘국방부는 실질적인 휴가 이용에 부합하는 여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그 한 문구로 통합해도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두 개로 나누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재부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자, 그렇게 정리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 노종면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노종면 위원** 이게 상임위 논의도 안 거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세 번에 나눠 간다고 그러면 교통비가 휴가, 그건 휴가비를 다 교통비라고 통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3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래서……

○**노종면 위원** 장병 일인당 35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씩 더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세 번에 나눠 간다고 하면, 한 번 쪼개서 안 나갈 때는 다 그게 보전이 되는 거예요, 35만 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두 번 더 쪼개서 나갈 수 있으면 일인당 70만 원씩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래서 두 번째 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출타 시 언제든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삭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일단 재정 여건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쓸 것인지는 국방부에서 다시 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비지원 방안 등을’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뭐……

○**소위원장 박형수** 방안 등을? ‘등’을 넣어서 빼고,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4쪽입니다.

연번 22번,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과다한 골프장 비율 축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두 쪽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들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일부 문구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쪽지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 중 일반 사병 이용이 제한되는 골프장 비율을 축소해 나가고’ 여기에서 ‘복지시설 중 일반 사병 이용이 제한되는 골프장 비율을 축소해 나가고’ 이 문구는 삭제를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골프장 회관’이라고 돼 있는데 골프장 회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대복지회관’으로 자구 수정을 건의하고 ‘차출한 사병을 최소화해 나갈 것’, 사병이라는 용어는 없

어서 ‘병사를 최소화해 나갈 것’ 그렇게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번?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체력단련시설 확대에 노력하며 부대복지회관에 차출한 병사를 최소화해 나갈 것’.

○**이소영 위원** 아니, 질문 하나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병사들을 투입해서 숙박시설 관리나 카페 운영을 하게 하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병을 병사로 수정할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또 첫 번째 동그라미의 뒷부분 문구 자체에 대해서 삭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삭제 요구 안 하신다는 거는 이게 명칭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골프장 회관이라고 할지 부대복지회관이라고 할지 여기에 지금 병사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골프장에는 병사들이 투입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대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강원도나 전방 접적 지역의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일부 면회자들이 사용하는 숙소 등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병들이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개가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여기 보면 숙박시설, 아까 식당 말씀하셨고 목욕탕도 말씀하셨고 숙박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기 지적 사항에 있는 숙박시설 관리, 카페 운영 이것과 비슷한 그런 역할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러니까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전방지역에 있는 부대회관을 이렇게 오인해서 잘못 쓴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해서 문구 수정을 건의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골프장을 지칭했다면 문구를 100% 삭제를 건의했을 것인데, 골프장 회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종면 위원** 골프장 주변에 실제로 골프장 찾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숙박시설이나 그런 것 아니라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혀 없습니다. 전방지역에 면회 오는, GOP나 전방 사단지역에 면회 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부대회관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골프장 축소는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매각한다거나 하는 그럴 계획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병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건 부여되어 있는데 사실상 병사들이 휴가 나와서 골프를 치고 하는 인원들은 원래 기존에 했던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골프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환원을 해서 장병 격려라든지 헬스장, 전방지역에 체력단련기구를 보급한다든지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취업지원 활동을 한다든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차관님은 골프 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좀 친 적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30여 개가 넘는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평가를 천하람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이게 30여 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최근 한 5년 동안 골프장

이 연평균 몇 개 정도씩 늘어 왔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골프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노종면 위원 30개 수준으로 스톱된 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노종면 위원 최근 5년간에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최근에는 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증설할 수도 없고 증설할 돈도 없고 그렇게 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당장 매각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지만 증설돼 온 것도 아니다, 증설할 계획도 없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에서 왜 골프장을 30개나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좀 밖에서 보는 골프장과 군에서 보는 골프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작전 대기라는 게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즉각 출격할 수 있도록 대기하려면 비행장 주변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동하면서 대기하는 것이고 해군들도 마찬가지로, 함대사 안에서 그렇게 있고. 주요 전투사령부들도 쉽게 말해서 가지 말고 잡아 놓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도 있고 그것 아니면 체력 단련하기가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프장처럼 호화 시설이나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다른……

○노종면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쭙볼게요.

이게 제가 기자 하면서 취재했던 사안이기도 해서 그런데요.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30여 개에 혹시 여성 골프 보조원, 그러니까 캐디로 불리는 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모든 골프장이 그런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부족한 데는 없는…… 소위 말해서 캐디 없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제가 전체 현황 파악은 못 했지만 대다수 골프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 여성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현황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대부분 여성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여성이 다수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더 정리 의견 제안하자면요. 천하람 위원님의 취지는, 아니, 군대에서 골프장이고 체력단련시설이고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일반 사병 이용 제한이 많이 되고 있다, 일반 사병 이용이 가능한 체력단련시설을 늘리자는 취지로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

가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완전히 들어낼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 중 일반 사병 이용이 가능한 체력단련시설 확대에 노력하며’ 이렇게 하면 제안하신 위원님의 취지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뒷부분은 오해라고 하신다면 ‘부대복지회관에 차출한 병사를 최소화해 나갈 것’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지금 실제로 풋살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일반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부대복지회관에 차출한 병사를 최소화해 나갈 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넣으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부처도 이견 없으시고, 위원님들도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5쪽 연번 23번 복지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 골프장 시설확보 최소화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마찬가지로, 지적의 취지에 공감하고 문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투입을 면밀히 검토할 것’,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 확보 계획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그냥 뒤도 되겠네요, 이 문구를. 왜냐하면 체력단련시설은 골프장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사들을 위한 풋살장이라거나 헬스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예산은 오히려 적극 늘려 가겠다고 앞부분에서, 22번에서 했는데 밑에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위원님의 지적 자체는, 지금도 골프장 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인원은 줄어 들고 있는데 골프장은 늘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정당하다고 보이는데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확보라고 국한했기 때문에 받아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이 문구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천하람 위원이 뭘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는 정확히, 골프장에 시설확보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천하람 위원이 표기했는데 사실과 다르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아마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4년도에 골프장에 투입된 돈이 52억인데 52억으로 아시다시피 골프장 한 홀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거기서 번 돈으로 무슨 장병들 복지 한다면서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번 돈으로 시설 유지를 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장병 복지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용자들이 내는 사용료로 50여 억이 감당되고, 더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장병 복지에 쓰고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천하람 위원은 그 52억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확장 예산으로 오인했다라고 억울하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확장할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이 문구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더 이상 뭘 하는 게 없다인 거고 복지시설 확보는 앞으로도 그것과 별개로 추진해 나가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체력단련장.

○**김성희 위원** 예, 체력단련장 같은 것들.

○**국방부차관 이두희** 풋살장이나 헬스장, 헬스장 도구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요 이 시설확보 예산의 범주 안에 기존 골프장에 있는 공간이 되게 넓으니까 거기에 그늘집을 새로 더 짓는다든가 이런 시설 확장, 이게 유지보수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시설확보로 잡히는 건지, 또 하나는 이 골프장이 홀이 있는 골프장만 의미하는 건지 골프연습장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혹시 더 생겼는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항목을 의원실에서 잘못 봤다는 게 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위원님, 유지보수 공사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런 여러 클럽하우스 같은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바닥재를 교체한다든지 기계설비에 대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보수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라서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보수로 잡히는 거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노종면 위원** 시설확보 예산이 늘었다고 여기 전제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그러니까 확보라는 게 약간 신규 확보처럼 어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규로 신설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기존 35개의 골프장을 유지보수하는 데만 쓰이는 시설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골프연습장도 없어요, 새로 생긴 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과 별개로 군에서 보유한 골프장은 앞으로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정서에는 좀, 눈높이에 안 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아마 매년 지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군 골프장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일반적인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장을 보시고 하시면 아마 인식의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예산 때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카트 있는 골프장은 없지요, 군 골프장 중에?

군 골프장 중에 카트로 이동하는 골프장도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요즘은 카트로 이동하는 데가 다수입니다. 과거에는 걸어 다니는, 전 홀을 걸어 다니는 데가 많았는데.

○**소위원장 박형수** 다수예요? 그래야지 체력 단련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여담이고, 자,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항은 그대로 두고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아마 이석해야 될 사유가 있는 모양이어서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병무청 차장 최규석입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기획조정관 문경식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296쪽입니다. 296쪽, 연번 2번입니다.

병무행정운영과 병역의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지하상황실 구축사업 예산 전용 집행의 적정성 검토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상임위 주의, 임종득 위원 제도개선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권해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병무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입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홍미루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317쪽입니다.

연번 2번, 수중자율기뢰탐색체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전 과정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상임위 주의와 임종득 위원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동일한가요, 동그라미 두 개가?

○이소영 위원 위에는 시험평가 절차를 재정비하는 거고 밑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관련 내용이어서 약간……

○소위원장 박형수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주의를 선택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18쪽입니다.

연번 3번, 항공통제기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예산집행 원칙을 저해하는 이·전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는 상임위 주의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주의, 임종득 위원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19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한국형구축함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의 방지 및 과도한 예산 전용 방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상임위 주의와 노종면 위원, 정진욱 위원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 3개를 합쳐서 그냥 주의로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3개를 합쳐서 주의?

세 번째는 제도개선.

○이소영 위원 이것도 주의로 해 달라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요, 아니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는 거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박형수 두 번째에서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주의를 선택하는 부분……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제도개선.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 두 번째에서 주의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22쪽입니다.

연번 7번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구매시험평가 및 성능 확인 등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리 기관은 차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요구사항 문구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에서 ‘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할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는 동 사업은 현안이 해소되고 사업이 정상 추진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위원 차지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변경서를 보내 주셨거든요. 부처 의견대로 시정이 아니라 주의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방위사업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소위자료 6권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몇 페이지?

○전문위원 정대영 14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전 실수요, 중기부 등 타 기관 사업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보시면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용하는데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서 어떤 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도개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주의 주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 제가 행안위에도 내고 예결위에도 질의를 내면서 예결위 주의가 남아 있었는데요 행안위에서 이미 제도개선으로 합의를 봤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5쪽입니다.

연번 3번, 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내용입니다.

세수결손 시 교부세 미교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시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 재작년 시정요구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해서 세입경정 이런 부분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연번 4번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부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주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0쪽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증공모 결과를 ISP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위에서 제도개선으로 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1쪽입니다.

연번 10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상임위가 제도개선이 있고 김성희 위원께서 시정 있는데 2개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도 시정,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처 의견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4쪽입니다.

24쪽, 연번 13번인데 이 사업도 어제 논의했던 보조금 미반납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 연번 14번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및 실집행 저조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징계건이 있는데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 사업은 균특회계 중에서 자율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강하게 이 부분을 하기보다는…… 이게 부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부산에서 포괄보조금으로 받은 것을 신중년 복합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에 따른, 물론 집행률이 그 당시 조금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지방의 자율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사업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사업 규모가 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특회계 자율계정인 경우에는 지방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목적 타당성 같은 것 위주로 보지 세부적으로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지 다른 걸 주시면 저희가 꼭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차관님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조정훈 위원 차관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 자율계정을 함에 있어서—부산이라고 그러셨나요—자율권을 존중했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교부함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건 예외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는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준수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데 이게……

○조정훈 위원 제 질문에……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동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까, 행안부의 해석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적용 대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적용 대상이지요? 원칙적으로예요. 그런데 그 조항 1항은 부처 담당자가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 집행하셨습니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해야 하는 것을 왜 지키지 않으셨냐고요.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거지 제가 지역자율을 무시했다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본질을 흐리고 계신 거예요.

통합관리지침 적용 대상이다라는 기재부 의견에 이견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거기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없지요? 그러면 17조 1항을 지켜야 되는데,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해야 하고 또 2항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월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두 번째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무시한다고 쳐도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위법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건 포괄보조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두 차례 이상 안 나뉘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정훈 위원 예스, 노로 얘기해 주세요. 안 나뉘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재부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포괄보조하고 관련해서는 예산안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포괄보조의 기본적인 정신이고요. 집행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보류해 주십시오. 법 해석의 정확…… 그래서 만약에 기재부 의견이 맞았다면 이걸 행안부가 법 해석을 잘못 알고 있었고 지침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행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전문위원, 이전에 심사할 때 이것과 비슷한 것에 대해서 보류해 놓은 사안이 있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이걸 아니고요. 미반납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미반납을 보류해 났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조정훈 위원 뭐 하나 했던 것 같아요. 2회……

○노종면 위원 국가기구인 한국연구재단.

○소위원장 박형수 그건 어떻게 해 났어요? 보류해 놓지 않았나요?

○노종면 위원 그것 보류 안 했는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건 어떻게……

○전문위원 정대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래요?

○전문위원 정대영 다 보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조정훈 위원 지금 이 행위를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6년 동안 이걸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지적이 돼 있는데 이게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 놓고 기준을 좀 통일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사례 뭐 하나 논의했던 것 같은데, 이것과 비슷한 것.

○이소영 위원 오늘 있었는데요, 앞부분에서.

○전문위원 정대영 이런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넘어간 것도 많거든요. 부처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논의 안 하고 넘어간 것도 꽤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수용한 것은 넘어가 버렸구나.

○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지금 이걸 건건이 하

시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통째로 하시는 것보다는.

○**노종면 위원** 과기부 사안은 보류했네요.

○**조정훈 위원** 과기부는 보류했습니까?

○**이소영 위원** 몇 페이지예요? 몇 권?

○**노종면 위원** 4권 90페이지.

이것도 나눠서 주지 않고 한꺼번에 선급금 100% 다 준 것 문제였거든요.

○**소위원장 박형수** 보류했어요, 그것?

○**노종면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건은 보류를 하고 이와 동일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같이 봐야 될 게 있으면 그 건도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 사안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남아 있는 보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류에 동의하는데 보류하고 재논의하기 전까지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전문위원이 동 사업이 국고보조금 통합지침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의 대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차관조차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거나.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포괄보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좀 통 크게 받아가지고 A를 쓸지 B를 쓸지 C를 쓸지를 정하는 걸 포괄보조금이라고 하거든요. 포괄보조금은 예산편성 때 많이 사용되고 집행 때는 아까 임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조정훈 위원** 그 전제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 연번 5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사무에 국비예산 투입을 축소하라는 지적이 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지역사랑상품권법 국가 지원 의무도 만들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 지원을 시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또 예결위 때 제가 기재부차관님하고 질의사항도 있어서 저는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할 걸 제안드리고, 제도개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누가 사는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실태조사 말씀 주신 것 기억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제도개선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하실 거라면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도 용역비도 세워 주신 게 있

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억할 때 기재부차관한테 물을 때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해서 역진성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셔서 그러면 우리가 팔 때 당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분 나쁘지 않거나……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파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신용카드로 사든지 뭘로 사든지. 그거랑 국세청 정보랑 연동해서 한 번 크로스 체크만 하면 금세 나와요. 그걸 설문조사를 할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 말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국고보조를 의무화시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어느 효과가 있고 제가 걱정하는 역진성, 저는 이게 어려우신 분이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으신 분들이 나눠 가지고 친구 나눠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깡 하는 분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기재부도 저한테 알려 주셨거든요. 이것은 정책의 입안자들이 그리고 국회에서 검토하는 사람이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를 알아 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국비예산 지원 최소화할 것’ 이것까지는 제가 주장하지 않을 텐데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만들어 낼 것’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그건 진짜로 제도개선이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당연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소득수준이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카드랑 연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라든지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건 소득수준하고 연계돼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에 명기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해 가겠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갈지를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김성희 위원** 어쨌거나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럼요. 팀도 만들고 해서 실행계획이라든지 이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문구들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정훈 위원 예, 좋습니다.

○노종면 위원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랑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건데 깡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그래요. 기재부에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제가 그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정훈 위원님한테 확인을 해 드린 사안은 뭐냐, ‘지역사랑상품권을 누가 사 왔는지에 관한 실태조사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실태조사 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 행·재정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면서 그 조항이 같이 포함됐으니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떤 분들이 사 왔는지 조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참고로 정부가 깡의 가능성을 우려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이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겨우 국회에서 조금조금씩 살려서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이 근근이 버티다 보니까 할인율이 6% 전후로 뚝 떨어져서 그 뒤로는 사실 예산을 다 못 쓰는 시도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할인율이 최소한 10% 정도는 돼야 구매자 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동인이 생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깡이 되려면 최소한 5%p는 더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이번에 지방 간 균형점을 찾은 게 약 10% 정도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차등을 뒀 가지고요 국비 지원율을 2%, 5%, 8%, 10%까지 해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지역은 15%까지 해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분은.

○노종면 위원 사용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한 7% 정도……

○노종면 위원 서울은 한 자릿수이고 나머지 인천·경기는 10%,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노종면 위원 이것을 가지고 깡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조정훈 위원 가능합니다. 위원님, 제가 초선 때……

○노종면 위원 거기서 깡 비율을 빼면 유통 실익이 떨어져 버려요.

○조정훈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중기벤처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언론사하고 같이 가서 판매처에서 1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바로 옆자리에 가면 그것을 진짜로 얼마 정도 할인해서 재구매하는, 그것은 중기벤처부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의 효율성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 가 보시면 쌓아 놓고 상품권 관련된 것……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언론사와 함께 특별취재해서 국정감사까지 질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뒷단의 얘기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사면 얼마 할인해 주냐 이걸데 더 아시겠지만 추석과 설날은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류도 쓰지 말자 이런 제안들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노종면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걸 그런 자리가 아니지만 하여튼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걱정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 훨씬 더 논의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논쟁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온누리상품권에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은 다른 거고요. 온누리상품권, 특히나 명절 맞아서 할인율을 높이는, 게다가 지류 발행되는 것 그게 소위 말하는 업자들의 타깃인 거지요. 지금 여기는 지역사랑상품권 얘기하는 거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이 제한이 됩니다,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일인당. 그래서 평균이 한 30만~50만 원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군이나 시에서 그걸 몇백만 원어치 사서 깡 할 그런 실익은 좀 적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문구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0쪽, 연번 8번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해도 취업연계를 저조 및 부정수급 증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동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도개선 해 주시면 앞으로 유사 사업 설계하게 될 때 문제없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종료되는데 제도개선 합니까?

○**조정훈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저희는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 인턴 기회, 창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였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제도개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청차장 유재성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46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상임위의 제도개선과 이종배·조정훈 위원님의 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상임위 의견인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첫 번째 것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게 이의가 있다면서요. 동그라미 두 번째 것에 이의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것부터 확인합니다.

두 가지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조정훈 위원 예,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노후차량 교체에 필요한 건데 사겠다고 한 차량의 숫자와 실제로 산 차량이 달랐고 집행 금액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러면 대부분 차 표준단가 곱하기 대수 해 가지고 예산 잡는데 금액이 다른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입찰하다 보면. 그런데 왜 순찰차량 대수가 달라졌습니까, 구매차량 숫자가?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24년 2월에 기동순찰대라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 신림동, 서현역 이런 데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생겨서 갑자기 24년 2월에 기동순찰대를 한 2600여 명 규모로 신설을 했는데 이 기동순찰대가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갑자기 차량이 필요해져서 차량 330대가, 팀별로 하나씩은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30대를 증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량 숫자가 교체와 증차가 좀 달

라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이 정도의 예산 변경은 규정 안에서 허용된 수준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세부사업인지 비목변경인지 단위사업인지 확인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만 보고 감을 가지고 규정 범위 내의 변경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규정 안에서의 변경이면 제 시정요구사항은 철회할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규정을 초과한 변경사항이다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이 내용이 노후차량 교체 내역사업의 집행 잔액을 증차 내역사업으로 변경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노후차량 교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일부를 했는데, 노후차량도 꼭 필요한 것은 했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증차가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증차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국회하고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에서 140대는 구입한 것 아닙니까, 55억에. 맞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분 75억에 관한 190대를 기존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해서 충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기존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존 계획이 노후차의 예산을 갖고 와서 한 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노후차를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김대식 위원** 예산이 75억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했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입니다.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랑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실은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국민들한테 직접 순찰하는 기순대가 순찰을 하고 출동하는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노후차량 교체는 행정차량,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이런 데 쓰는 차량들을 우선순위를 조금 미루고, 그러니까 기능 노후차량의 교체 순위를 조금 미루고 기순대가 출동할 수 있는 330여 대에 우선순위를 조금 행정과목 간의 변경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상의하셨습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초기에 기재부랑 의견 교환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크게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조정훈 위원** 예산 전용할 때 집행할 때 기재부와 상의하셨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집

행하고 관련해서는 아마도 부처에 위임된 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은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경찰청을 대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노후차량은 점점 감소하고 190대가 증차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하는데 경찰청 차인데 꼭 이 차는 출장 갈 데만 쓰고 이 차는 범인 그것 할 때만 쓴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같이 쓰면 되지.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기순대 차량과 순찰차량은 경찰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능성 차량은 행정차량이라서……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보안상 행정의……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저희들 출장 갈 때……

○김대식 위원 출장 갈 때는 그런 경찰 마크 자체가 없는 거지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걸 그러면 보류를 해 놓고 아까 집행 과정에서의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이영팔입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오승훈 기획조정관 오승훈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55쪽입니다.

55쪽, 연번 1번입니다.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청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시정을 했는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은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조정훈 위원 상임위대로 가야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이유는?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했는데 왜 주의로 바꿔 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

○소방청차장 이영팔 지적하신 부적정한 집행과 관련해서 소방청은 먼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삭감과 담당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엄중 경고와 주의 등 재정적·인적 제재를 받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재정집행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시정으로 하셔도 되지 않아요? 주의로 꼭 해 드려야 되나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게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이런 게 필요한가요, 원상복구나?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6월에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방병원은요.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의료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내년 6월에 정식 개원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정으로 했는데 시정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네요. 추정이나 회수, 원상회복, 사업 방식 변경 이런 게 수반돼야지 시정이고 그렇지 않은 위법 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조정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조치들이 다 이미 완료된 겁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경고 다 받았고, 교육 다 시켰고, 매뉴얼 변경 다 했다는 것……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적절한 것들을 다 개선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의 여기 맨 마지막 줄에 해당되니까 이건 시정이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사업 방식 변경을 했어요?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관리를 잘하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사업관리, 이게 사업 방식 변경에 포함된다.

○노종면 위원 상임위에서 의견을 어떻게 내셨어요? 아니, 상임위에서 질의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똑같이 답변을 드렸는데 시정을 해 주셨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럼에도 시정으로 의결한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상임위대로 하시지요.

○노종면 위원 예, 저는 상임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무조건 상임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맞게 해야지요. 그런데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도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상임위대로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7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은 보니까 내용 자체가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이 사업 지연의 이유가 된 것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여 가지고 주의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8쪽입니다.

연번 1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청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9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에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청에서는 이 사항 또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회

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거지요? 소방청이 교부금 나눠 주는데 잘못해 가지고 전액 이월된 이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소방청차장 이영팔 지금 교부금을 나눠 주기 전에, 계약 전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교부금을 받아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면밀히 먼저 검토를 하고 시점에 맞춰서 교부금을 내릴 계획에 있고요.

또 만일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이 늦어질까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만 현장에 점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가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중간 점검하면서?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을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니까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데 제도를 명시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다면 제도개선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소방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성훈 기획조정관 김성훈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인사혁신처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옥미선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74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휴직자 추계 등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정부가 의견이 없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거관위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제도개선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선거 직전 휴직자 대거 발생을 해소하지 않은 책임자를 적절히 징계할 것’에서 ‘선거 직전 휴직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4월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 인건비 30억 원을 국회의원선거관리비로 이용 처리한 것은 선거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표소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도입을 하면서 추가 개표사무원 1만 3000여 명 수당 등을 확보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24년 인건비 편성 당시 직전 수년간 계속된 불용으로 인해 인건비가 과소 편성된 측면과 집행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등 복직 및 의무채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과원 운영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4년 12월 인건비 집행액이 부족함에 따라 역시 기재부의 승인 과정 등을 통해 타 사업에서 인건비로 65억 원을 이·전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재정 당국과 면밀한 사전 협의 및 추계를 통해 정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우선 내년 예산 정부안에는 적정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보장되는 휴직이기는 하나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여전히 선거 시기 휴직자가 다수 발생하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시기 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정책 시행 후 22년 대선 때 6.6%였던 선거일 휴직

률이 24년 국선 때 5.6%, 올해 21대 대선 때 4.8%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휴직자 최소화 및 복직자 등 상황 파악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인력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거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 얘기를 했나요? 내가 그걸 못 들어 가지고 ‘이상하다’ 그랬구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선관위는 솔직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딱 것도 아니고 제도개선으로 아무도 잘못된 거 없게 해 달라고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자고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저희들이 그런 지적……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발언 안 끝났어요.

22년도의 시정요구사항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막대한 중앙예산이 드는데 일할 때마다 휴직자 대거 발생해요. 선거 안 하는 편한 시절에는 다 돌아오고 선거하면 휴직하고 이런 식의 복무규정과 윤리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쟁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군인들이 다 제대합니까? 이따위 윤리규정을 갖고 일을 하면서 이게 제도의 문제라고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있으세요?

민간기관이었으면 이거 망해도 진작 망했을 회사예요. 더 달려들어서 단결해서 선거를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치를까, 휴직자가 대폭 줄어야지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넘어가자고요? 법령과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가 불리해요, 지금 법령과 제도가?

이것은 징계 사항이에요. 상습적으로 휴직하는 사람 징계 사항이에요. 이것을 허용한 관리자들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가지고 와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뻔뻔함,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최소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중에서도 사업추진 방식 변경…… 정말로 선관위 직원 중에 할 수 없이 휴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프거나 병가가 있거나 이런 사람까지 제가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고질적으로 휴직을 계속하는 선관위 직원은 승진이나 인사조치에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기관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 시점에 구성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제도의 탓이라고요? 해이한 근무 기강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것은 징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김성희 위원 몇 가지 선관위 입장도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저도 이렇게 내용도 들어 보고 쪽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부분은 지난 선거 때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공산당 와이파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수기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수개표를 정당들이 요구를 해서 갑자기 손으로 셀 수개표 사무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 안 했던 인건비가 확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요구했던 정치권에도 일부 함께 책임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휴직률은, 현재 공무원들 휴직률이 얼마나 되지요? 기재부차관님, 혹시 통계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행정부의 휴직률은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4년도에 국가공무원 평균이 6.4%였는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5.0%입니다.

○**김성희 위원** 하여튼 그렇게 낮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 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휴직하는 사람 중에 지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육아휴직을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인사책임자를 징계한다고 해서 애 있는 사람이 ‘내가 휴직하겠다’ 그러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무원의 자기 윤리를 다질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대책으로 한 번 그런 식으로 선거 때 빠지고 휴직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서울 선관위에 있었으면 경기도로 보낸다든지 경북에 있었으면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예고 없이 이렇게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관위로 옮기는 등의 대책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위낙 이런 문화가 만연해서, 사실 직장 다니면 서로 눈치를 보느라 휴직을 못 하는 거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왜 못 합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당신들도 했으니까 나라고 못 할 것 뭐 있냐 싶으니까 그냥 대선 때 놓고…… 국회 보좌관이 선거 때마다 휴가 내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인사책임자 징계로 할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저도 대책은 없는데……

○**조정훈 위원** 시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김성희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정은 수용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 간단히 저희들 추진한 사항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국회의원선거 및 올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 시기 휴직자 감소를 위해서 인사정책 한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8월부터 선거 전에 휴직 예정, 선거 시기에 휴직할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고 또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휴직 후에 복직을 하게 되면 타 시도로 인사발령을 하겠다라고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연의 기관 목적을 위해서 휴직 자체 공문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휴직과 관련해서 질병휴직이라든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신청서 제출

하게 되면 인사부서에서 심사를 강화했고요. 또 감사부서에서는 실제 휴직자에 대해서 휴직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지 실태점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안내 및 예고에도 불구하고 휴직 예정 보고 없이 선거 전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직원은 실제 타 시도로 직접 발령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22대 국선 때 선거일 기준 휴직자 168명 중의 96명, 57.1%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보장받는 육아휴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85%는 바로 직전에 출산하신 분들 또 초등학교 입학 준비 등으로 인한 휴직이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부서 차원에서 그 휴직 자체를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지적처럼 국가공무원법에서 보장되는 휴직이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선거관리기관에서 휴직하면 되겠느냐는 지적,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 휴직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대선 때 196명이었던 것이 작년 국선 때 168명 또 올해 대선 때 143명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휴직하는 직원들을 사실상 좀 좋지 않게 봅니다. 해당 휴직을 하는 직원들도 진짜 미안한 마음에 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휴직을 제외한 다른 휴직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계속해서 제도개선인데……

아까 육아휴직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57.1%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을 기준으로.

○김대식 위원 전체 휴직이 57.1%, 육아휴직만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전체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전체 휴직자의 57.1%가 육아휴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 전체 휴직자의.

○소위원장 박형수 육아휴직이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걸 다른 부처 전체와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비율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 중에 그 비율은……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다른 사유는, 사유별로는 어떤 어떤 순서대로 돼 있던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대부분이고요……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 아까 오십칠점몇 프로라고 그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다음에 질병휴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질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질병휴직이 27.6% 또 가족돌봄휴직이 8.6%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가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조정훈 위원님 제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이게 질책을 받으셔야 될 일이지만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마련한 대책이 적절한지를 한번 따져 보려 그러합니다.

사유별로 보면 아까 육아휴직이 오십칠점몇 %라고 그러면 그 비율이 타 부처와 비교해서 어떤지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질병으로 휴직한 게 27.6%라고 그랬는데 그것 역시도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다음에 혹시 두 번 이상 휴직한 분은 체크가 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지금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4호에 보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8세 이하 자녀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양육에 필요한……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 사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두 번 이상 휴직한 사람 이런 것 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두 번 이상 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유는 뭐고 두 번째 사유 뭐고 이렇게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체적으로 자료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하여튼 종합적으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조직 전체가 달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아까 여러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전쟁 때 비유도 했고 선거 때 비유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은 보류를 해 놓고 그리고 사유별로 정말로 안이하게 대처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제도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류로 해 놓고 사유를 좀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저도 질문 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통상적인 수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68명이 최근 선거 때 휴직을 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작년 선거일 기준입니다. 선거 당일 기준입니다.

○이소영 위원 아무튼 160명 정도라는 거잖아요?

전체 직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2982명입니다.

○이소영 위원 2982명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이소영 위원 그중에 160명대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5.6%.

○이소영 위원 5.6%. 그런데 다른 행정부 평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행정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 6.4%였습니다.

○이소영 위원 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연도 말 기준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선관위가 특별하게 높다기보다는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전국에 사무소가 있는데 인원 총원은 적다 보니까 다른 부처에서 한 명 빠지는 거랑 선관위에서 한 명 빠지는 게 차이가 있는 기관 자체의 특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 지적도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전쟁 나면 군인들이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맞고 선관위가 선거 때 업무를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휴직자분들이 아마도 국가공무원법상 아무렇게나 휴직할 수는 당연히 없을 테고 어떤 법정 휴직이거나 아니면 법정 휴직에 준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서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심사를 받아서 휴직을 하는 것일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부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비율 자체도 평균 부처보다 높지 않고 그리고 사유가 없는데 아픈 척하고 병 휴가를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또는 우리나라 전체 행정적인 관리상 안 될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를 들면 신빙성이 있는 어떤 기관의 진단서 내지는 그것에 의한 휴직 심사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마 다른 부처들도 다 할 텐데 그러면 이게 과연 휴직자가 발생하는 게 문제냐라는 것에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일터에서의 휴직제도,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점점 일수가 늘어나고 기간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을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어떤 대체근무제도 이런 인력운용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잘 보장되어야 되는 점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관 특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빠지면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기관인 건데 그것을 어떻게 채워서 일에 무리가 없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선거 때지만 육아휴직, 질병휴직 또는 아이출산, 입학 준비 휴직 이런 것 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어떤 심리적인 불이익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터에서의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하고 반대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선관위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해 주신 거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보류하신다고 하면 보류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노동 복지와 관련해서 강화되고 있는 제도의 취지도 고려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도개선하고 보장된 대체근무제도

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대선 기간, 국회의원선거 기간이라고 하면 선거 전후로 휴직률을 통계 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선거 때 아닐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미애 위원 예, 선거가 없는 해에 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보통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작년 4월 같은 때 선거가 있으면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휴직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일 자에 휴직 신청했던 사람들이, 6개월 신청하셨던 분은 7월 1일에 복직하고 또 전년도 7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1년 신청하셨던 분은 또 작년 7월 1일 자로 복직하고.

보통 저희들이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이유가,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임 인력들을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 자라든지 공채자 등을 통해서 그 인력을 좀 대체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미만 휴직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시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해당 시도에, 6개월 미만 휴직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질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휴직에 의도적인 휴직의 그게 있느냐라는 거지요.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휴직에 그게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동의하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관위 직원들도 부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젊은 부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양육할 때 부부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모든 위원회가 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둘 다 그래 버리면 아이를 양육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은 휴직을 하는 게 지금 젊은 부부들의 현실적인 문제 인식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치면 선거 기간에는 이것은 당신의 일이니까 이때는 당신이 일해야 되고…… 부부 공무원이면 선관위에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휴직하는 게 정상이지요.

○이소영 위원 둘이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 선관위 내부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둘이 다 선관위일 때…… 그렇군요.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여기의 전제는 뭐냐면 선거가 있는 해의 휴직률과 선거가 없는 해의 휴직률이 다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연도별 휴직률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163명이었습니다. 23년도에 선거가 없었는데 선관위 휴직률이 163명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도 말 기준으로 152명으로 오히려 그 차이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줍니다. 선거 때라서가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22년 양대 선거 때 휴직자가 많아서 그 당시에 국회의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23년도부터 계속 차근차근 휴직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22년도에 휴직자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총선 때? 22년 때 무슨 선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때가 많았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때가 많아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던 거고, 23년도에 그러면서 줄어들었고 23년보다 또 24년도 들어서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형수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종면 위원님 먼저 하시고.

○노종면 위원 아주 면밀히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자칫하다가 국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 이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요.

육아휴직은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건이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육아휴직을 핑계로, 이게 업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오용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60여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어떤 주관적인 인상들, 그런데 퍼센티지로 바꾸면 다른 조직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육아휴직 제도는 대부분 다 6개월 이상씩 써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조직에서는 보통 1년씩 쓰십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에 걸쳐 있어요. 그중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그것은 권리의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전국단위 선거가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 2022년에는 많았을까? 피해 갈 기간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 해석이 돼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다른 선거 때는 평년이란 비슷할 겁니다. 피해 가기로 치면 육아휴직 제약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중선관위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인식이 있으면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세적으로 하시면 자칫 의도치 않게, 선거 때 피하고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 시기에 걸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또 올해 대통령선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가 덜컥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육아휴직 1년으로 가신

분들은 대선 없을 줄 알고 갔는데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자칫 육아휴직 가셨던 분들, 질병휴직 가셨던 분들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진행이 육아휴직을 가셨다는 57.1%가 걱정하나 걱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선관위가 지금 얘기 안 하는 통계는 2021년 통계인데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그 당시에 찾아서 발표하신 것은 21년에 100명 휴직이었는데 22년에 지방선거랑 대선이 겹치니까 200명 휴직으로 두 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말대로 그 뒤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좀 찾아들어 있는 상태는 또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 것은 아닌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이게 육아휴직이라는 어떤 건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설명처럼 부부가 선관위에 있으면서 선거 때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냥 육아휴직을…… 3년이지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3년입니다.

○김성희 위원 이걸 양쪽에서 써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쓰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전반적인 문화가 선거 때마다 ‘선배도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선거에 빠질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 만연해 있는 것 자체는 고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정제로 고칠 문제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조정훈 위원님이 먼저 발언권을 얻으셨거든요.

말씀하시고요.

○조정훈 위원 저도 선거에 관계없이 정말로 할 수 없이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휴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특히 병가 또 육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8년의 기간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육아휴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자료를 얘기했고 22대 총선 이후에 복직자 증가 등으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돈 남는다 그래서 반환하게 했다가 총선 이후에 복직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모자랐던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누군가가 이 업, 자기가 중앙선관위의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업이 갖고 있는 업의 특성을 충분히 알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 때 육아휴직 가겠다고 하면 갈 수는 있지요. 거기에 대한 값은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이 업이라는 특성이 그런 거예요. 선거 때 우리는 바쁘다,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내가 할 수 있

게 해 달라……

저는 옛 직장에는 출장을 거부하면 사퇴를 할 수 있다라는 데 사인하고 들어갔어요, 해외출장이 워낙 많은 직장이어서. 제가 스스로 거기 동의하고 갔어요.

선관위에 들어온 사람은 선거 때는 바쁘다, 선거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기본이예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인 통계 요구할 거예요. 선거 끝나고 복직하는 현황 그리고 6개월 쯤 잘라서 하는 현황 다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긴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 동의하고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지만 국회와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질타, 이런 거를 밖에 나가서 진짜 쉽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저도 이게 보류될 것 같으면 더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진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는데……

이게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직장들이 다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의원실에서도 아이를 가지거나 출산해서 대체인력 구하고 휴직하는 직원이 생기면, 저희 방에도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 미안해 하고 죄인이 됩니다.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도 다른 고생한 직원들한테 막 죄스러워 해요. 우리나라 직장들이 사기업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키우는 거는 우리 사회의 기능 중의 하나고 그걸 사회가 같이 분담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입장을 바꿔 놓고, 저는 선관위 직원 중에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생각해 보면 선거 때는 일·가정 양립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아이들 등·하교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애들 숙제라도 챙길 수 있겠지만 선거 때는 그게 분명히 어려울 것이고요.

국회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평상시에는 일부 가능하겠지만 국감 때는 보좌진들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 동동 구르다가 법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휴직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파렴치한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휴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가 아니라, 휴직자 발생을 어떻게 최소화하겠습니까, 지금도 법적인 권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휴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제도개선의 방향이어서는 안 되고 휴직자 발생은 될 수 있는 것을, 선거 때도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업무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근무제도 강화, 이게 제도개선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다들 사명감이 있지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중요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본인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직제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그만되라’라고 하

는 사회에서는 저는 육아나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좀 근거를 남기고 싶어서요.

○소위원장 박형수 또 하십니까? 근거 많이 남기신 것 같은데……

○노종면 위원 조금만 더 남길게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짧게 남기세요.

○노종면 위원 여기 지적사항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전제가 있는데 24년 4월 총선은 평균보다 낮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22년도보다 쪽 낮아졌고 2022년도가 6%가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6.6에서 5.6으로 줄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5% 중·후반대가 평균인데 22년도에는 약 0.8%p 정도 높았다는 것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에 제도가 바뀌었더군요,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변수가 작동했던 것들을 일단 감안은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이유로 특정 기간에……

어떤 이유로든 1년만 바짝 못 쓰게 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면 그다음 해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휴가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집단적으로 짜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조직에서 이 수치가 파악이 됐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도별로 거의 평균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보류를 하실 거면 또 논의를 하시겠지만 꼭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수치가 이전보다 호전됐고 평균보다 낮는데 시정요구를 할 대상이 맞는가, 이 부분이 저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지 정부 부처의 각 부분들을 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제가 되는 지적사항이 유효한지부터 검토하고 보류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 나왔으면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충분히 논의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은 보류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기획운영관 한성원 진실·화해위원회 기획운영관 한성원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진화위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대식 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서면질의로 한 것 있습니다. 보셨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김대식 위원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정리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기획지원과장 임재진 기획지원과장 임재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김대식 위원 여기는 자료가 없네.

○소위원장 박형수 자료가 없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태원특위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1·2차관 자리가 바뀌신 것 같네요. 헛갈릴 수 있으니까 바꿔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어서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해당 기관에 주의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이거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것과 두 번째 동그라미 이게 다른가요? 보조금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반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도 이제 주의니까 이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같은 내용이신가?

○조정훈 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조금 전에 아까 보류해 놓은 보조금 관리지침 위반 사안이 있지요. 그것과 지금 다 유사한 사안 아닌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조정훈 위원 일괄 보류할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들, 같이 보류를 해 놓고 같은 기준에서 해야지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금액이 없어요? 얼마를 썼고 얼마……

○조정훈 위원 실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실집행률이 지금 36%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산이 24년에 307억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한 200억 못 썼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노종면 위원 한 70억밖에 안 썼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다년 사업인데요. 보통 3년……

○임미애 위원 3년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2~3년입니다.

○임미애 위원 3년 사업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누차 제가 강조를 하지만 예산을 그냥 부처 이기주의로 막 확보해 놓고 이게 굉장히 만연이 돼 있어요,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것은 좀 절약하고 또 국가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해 놓고 또 안 쓰고 못 쓰고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짜는 데도 문제가 많잖아요. 늘 내가 강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짜고 확보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기, 허락하시면 한말씀만……

사실은 이게 종교문화시설 건립이다 보니까……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것 하면 종교로 또 넘겨 버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류해 놓은 사안과 비슷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이것도 보류를 하고 타 부처 것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6쪽입니다.

106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해외거점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

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징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한 점을 고려해서 징계·주의·제도개선에서 주의·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저는 징계를 주장했는데 상임위에서 주의로 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에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고, 요즘은 유리알 보듯이 다 볼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징계는 철회하고 주의로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하시는 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분만 대답하고 두 분은 대답 안 하시는데.

○김대식 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걸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7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등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징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시정에서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동일한 사안인가요? 동일한 사안이라 하면 아래 걸 다 삭제해도 되나요? 그대로 두고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시정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는……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 저희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국립전통예술중고에서 허위 예산편성 그리고 20년부터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입시 및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적사항이 허위 예산 편성·집행 문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컨대 일본의 가고시마를 간다고 하고 다른 곳을 갔는데 전년도에 갔던

가고시마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서, 그래서 잘못됐다는 면이 있고요. 안 갔는데 갔다고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실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준비해서.

○**김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입시비리라고 되어 있는데 입시비리가 있으면 징계 하고 감사원 감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입시비리는 결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 입시비리로 하는 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있을 거니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거를 주목해서 좀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여기 지적사항 첫 번째 보면 방일 앞에 방한이 있는데 방한이 한국 방문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거는 교류사업을 하니까……

○**노종면 위원** 일본에서 올 때 들어가는, 맞이하는 비용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겁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것들을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중입니다.

○**임미애 위원** 경찰 수사 중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소영 위원**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 얘기하는 건가요? 2025년 7월 29일 자 단독 기사에 ‘실기시험 전에 합격자와 불합격자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심사위원들한테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게 제기된 의혹이고요.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

○**이소영 위원** 교사 채용도 채용 몇 달 전부터 채용을 대가로 금액을 주는데 그게 녹취록이 나왔다, 이것 심각한 학교네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담당 예술정책관입니다.

상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서의 허위 기재 부분은 예산서에 일본 가고시마를 간다고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갔던 게 맞는데 코로나 때 가고시마가 아니라 동경을 갔는데 그다음 해 예산서에 사실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렇게 계속 예전에 했듯이 관행적으로 실체가 좀 다르게 예산편성서에 계속 기록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동경을 가기는 갔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가거나……

○**소위원장 박형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동경은 갔는데 원래 처음에 가고시마로 해 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시마 간 것으로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갔는지 여부도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일본을 가기는 갔네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일본을 갔고 또 다른 곳도 교류사업이 있어서 가기는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시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22년인가 23년도 채용 건이고요. 당시에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감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상세한 제보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결이 됐고 최근에 다시 이런 제보가 구체적인 게 들어와서 경찰에서 지금 내사 중이고 이 부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점상 2022년, 2023년 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고 갑자기 최근에 제보가 있었다면 이것은 뭔가 세상이 바뀌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 주는, 비호해 주는 세력 때문에 제보를 안 하시다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혹시 제보가 이루어졌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담당……

○**노종면 위원** 아니, 제보가 이루어진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이 관련 학교 교장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현재 후임 교장 인선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전 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했다는 의혹들이 좀 있다 보니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제보가 계속 잇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당초에 원래 국립은 아니었고 사립학교였고요, 2007년도에 국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전에 저희가 했던 관행, 사립학교에 있었던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번에 관두신 그 교장이 2007년부터 계속 교장이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아닙니다. 이 교장선생님은 원래 국악 전공하셨다가—학교 교직원이 아니고—오셨는데요. 재임을 하시고……

○**노종면 위원** 언제부터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연이어 8년을 하시고 나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지적사항의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가 갔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요. 특정인과의 이해관계 충돌과 물품 조개기 수의계약 체결로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하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예결위에서 다시 추가 제기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22년에 가야금 구매를 할 때 한군데서 몰아서 하지 않고 쪼개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특정인과 계약 부분은 100만 원, 200만 원 계약을 여러 건 했는데 이 사람이 학교의 강사 출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신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강사로 근무

했던 이력이 2010년에서 2021년, 옛날 근무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검토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에 넣어서 하겠다고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정훈 위원**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어떻게 아셨어요? 감사를 하셨어요, 제보가 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김재원 의원님실에 아마 제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24년도 결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상황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혹시 감사를 저희가 더 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감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혹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그것도 저희가 수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원이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필요한 경우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조정훈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교육청이 아니구나, 이거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문체부 감사관이 외부 개방적으로 해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사안은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의 거 지금 예산 관련해서……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가 시정을 의결했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 문구도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 관련 없는 문구들이 다 쓰여 있잖아요.

○**이소영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게 맞나요?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이나 이런 게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현재 제보된 사항—쪼개기 계약—은 2022년도 건이고요. 수의계약 건은 2016년에서 25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데 정확한 상황 파악은 더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류하실까요? 좀 내용을 알아보고……

○**조정훈 위원** 최소한 시정인데 이건……

○**노종면 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여기 퇴임한 교장을 징계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퇴임하고 나면 징계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수사나 이런 걸 해서 형사처벌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 환수해야 될 돈이 있으면 환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김재원 위원이 제시한 징계 의견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교장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교장선생님이 최근에 은퇴를 했으니까,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교장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정계를 하라고 이렇게 또 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사안은 보류로 정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8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시정요구는 수용하나 기재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무슨 말이야, 기재부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사실은 교육부하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예술강사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지방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거나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가 합의가 된 내용은 뭐냐,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혹은 교육청 자체 자금으로 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교재비 같은 그런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교육부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합의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26년 예산 내용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더 많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증액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구는 이게 저희가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에도 일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해라라고 예산을, 특정 금액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구를 저희는 제안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얘기를 해 보세요.

○김대식 위원 참 이게 우리나라 구조상 이래요. 카이스트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과학기술부고. 그다음에 산업기술대, 교육대학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또 산자부 거고 예종은 또 문화부 거고 나머지는 또 교육부고 이러니까 교육부, 문화부, 산자부 이런데…… 이게 교육으로 보면 교육부인데 또 관할은 그쪽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는 이거를 지금 통합 조정하는 게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까 한국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문화부 산하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교육청하고 또 연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일단 저희하고 여기 문체부하고 합의한 추진 방향이 있고요. 잠정 합의된 문구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학교예술강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26년 국회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쪽에서 인건비 관련된 액수가 증액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학교예술강사하고 관련된 간접비하고 운영비를 늘릴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임미애 위원 시정으로?

○김대식 위원 시정입니까, 제도개선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시정 요구했고 저희는 수용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정훈 위원 수용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문구는 조정하는 것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문구 조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지요.

○조정훈 위원 아까 읽어 준 문구……

○소위원장 박형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학교예술강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연번 6번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상임위 주의가 있고 박희승 위원께서 제도개선 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적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주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적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를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하여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어떻게 제도개선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공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실집행률이 낮은 거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은 지방 순회 공연이라든가 순회 전시 같은 것을 많이 늘려서 지방 젊은이들이 문예회관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11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숙박할인권 발급 전후 가격 검증 및 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의 지적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주의로 요구하였으므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김대식 위원 이것은 상임위……

○이소영 위원 시정으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바뀌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낮은 단계의……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별 차이 없어요.

○조정훈 위원 화끈하게 낮으면…… 이것 잘 생각해 보면 김재원 위원님의 지적은 숙박할인권 사업이 플랫폼사의 수익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 이유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춰라 이걸데 시정이나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소영 위원 부당이지요.

○조정훈 위원 부당한 사실이야?

○이소영 위원 예.

○김대식 위원 부당 가격 적발 건수가 619건 있다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부당 가격이라는 게 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할인할 때 할인하기 전에 받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숙박업체들이.

○김대식 위원 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원을 받는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숙박 할인하는 것을 알고 그 기간에 맞춰서 높게……

○**김대식 위원** 알고 더 높여 놓고 거기에다 할인하면 할인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할인한 게 아니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너무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속가능이 안 되는 거야,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이소영 위원** 그런 것을 방치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시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16페이지 연번 4번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계적 자금을, 출자라는 펀드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술의전당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정요구사항이 4건이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전체 다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를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이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금을 국고로 편성했던 사항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예술의전……

내가 이야기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김대식 위원** 지금 문화부에서, 예술의전당은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서요, 거기서……

○**김대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고로도 일부 지원해 주고 버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편당을 받아 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주잖아요, 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자기가 벌거나 기부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게 국고보다는 많지는……

○**김대식 위원** 훨씬 많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자체가 60%입니다.

○**김대식 위원** 자체 60%고 40%가 국고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성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술의전당의 경영진, 사장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라기보다 무슨 피아노 전공자,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여태까지 기용해 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성격으로 보면 기업인이나 아니면 이런 기부를 잘 받을 사람, 경영을 잘할 사람을 사장에 앉혀 놓고 자체 수익,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기업들로부터 모금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예술인 위주로 해 온 게 문제를 사실 일으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술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무슨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것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한 200억 적자 났지요, 여기?

○조정훈 위원 200억 적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데 이게 그런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시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서 이것은 문체부가 진지하게 그런 문화예술 경력자를 뽑을 게 아니라 사장에…… 예를 들면 이사장은 지금 기업인이 아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인을 모집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도 김성희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예술의전당은 밑의 하부조직은 예술에 관계된 분이 하더라도 사장은 경영이예요, 경영.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한번 그것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위원님들이 원래 해야 될 일에 집중은 안 하시고, 지금 제도 개선으로 낮춰 달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다른 얘기만……

○조정훈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가 국고보조금을 비효율적으로 썼다, 그런데 이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관리·감독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가 재산세가 면제 대상인데 갑자기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됐는데 시정요구사항은 다시 면제 대상으로 추진해라 이것인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게 처음에 지방세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술의전당이 있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 최근에 24년에 다시 그 시행령을 재개정해서 현재는 50%만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기관의 특성상 다시 면제받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방세 특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행안부 의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행안부 시행령을 바꿔 와라 그런 주문 사항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관계없나요, 그냥 시정명령이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행안부가 동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을 요청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시행령 개선.

○소위원장 박형수 말씀을 안 하시네요, 다들.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해 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두 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두 건 수정의견인데요.

○노종면 위원 간단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주 간단한 거고요. 하나는 대폭 수정의견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42번이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 가맹단체당 2명씩 인력 증원인데요. 저희도 이 취지에는 본질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막 가맹단체당 2명씩 증원하도록,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고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문구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적정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김대식 위원 2명인 것은 꼭 못을 박지 말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랑 문체부랑 협의해서 적정 수준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 정도 수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대식 위원 예, 저는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거 상임위에서 한 내용 아닙니까?

○이소영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이견을 제기하는……

○조정훈 위원 지금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34개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34개 곱하기 2 하면 68인데, 68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김대식 위원 못을 박지 말자 이거지.

○조정훈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좌우간 2명은…… 현재 있지요, 이게 원래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지금 차이가 한 두 명 정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업무량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똑 같이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안 한다고는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최소한 증원되는 거는 확실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8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폭적인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쪽 이렇게 정부를 운영을 하면서 지방재정 분권이라는 화두가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을 지방정부로 같이 넘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문화체육부하고 관련된 사업들도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체위에서 의결한 건 뭐냐? 지방으로 넘겨 놓고 보니 이 사업이 잘되는 데는 잘되고 못되는 데는 못되고, 돈 있는 지자체는 잘되는 것 같고 돈 없는 지자체는 잘 못되는 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지방이양이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이것을 분석하고 재검토해서 지방이 할 건지 중앙이 할 건지 다시 결정해 와라 이런 주문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이미 지방으로 이양이 된 거는 사업만 넘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재원도 같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거는 지방분권에 반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방으로 넘어간 돈을 다시 중앙정부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찌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정요구사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기본적인 취지가 지방으로 넘어간 문체부 사업을 다시 문체부로 돌려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라는 게 지역별로 문화적인 격차, 재정 여건 격차 이런 것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측면이 있으니 이미 넘어가 버린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사업이라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해서 잘해 보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하시면 저희는 문구는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예술·체육 분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 성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대로의 내용을 담지는 못합니다.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 버린 사업을 문체부로 다시 가져와라라는 얘기인데 이 제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 지역 간 문화 사업의 격차, 체육 사업의 격차를 완화해 보는 식으로 문체부가 행정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는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안 정도로 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희 위원 요지는 ‘집행 주체를 재정립한다’ 이 문장인 것 같은데요, 문체부는 상임 위 논의 때 이렇게 합의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기재부차관께서 설명한 대로 지방으로 재정권이 좀 많이 넘어가야 된다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방에, 예컨대 진주시에다

가 설립을 하는데 진주 주변의 광역까지 이렇게 포괄할 만큼 커다란 복합 문화공간이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예외를 뒤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게 이 문장으로……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노종면 위원 그러면 여기 문장에……

○김성희 위원 그러면 문장을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노종면 위원 각 사업별로……

○김성희 위원 그러면 문장을 고치지 말자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대로 해도 그거는 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사안은, 이거는 상임위하고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본 취지가 영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상임위에서,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해당 상임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께서는……

○노종면 위원 잠깐, 계실 때 여기 예산과 관련된 건데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물어보세요.

○노종면 위원 문체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나왔을 거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생활체육지도사 경력 인정해서 처우를 좀 개선하자 이런 얘기는 수년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지도사 없는 도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똑같습니다. 그 박봉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정한 경력이 쌓이면 좀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활체육지도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그게 다시 생활체육인들에게 돌아갈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급이 똑같더라고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거 개선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걸 요구하는데 그런데 전국에 2800명입니다. 그 부분을 다 수용하기에는 유사한 다른 직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리고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아이디어랄까 직원들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은 저는 공감합니다. 5년이나 25년이나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호봉제는 아니더라도 5년 단위로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해서 5년 단위별로 지원율을 몇 %씩 더 예산을 계상해서, 그러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끼리 검토안은 안 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지금 드린 거고요. 또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된 사안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긍정적인 방법 모색이 일단 출발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5년 단위는 좀, 기왕 개선책을 만든다면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한다든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말씀드린 게 차등 장기근속수당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예, 하여튼 제 요구는 그게 좀 더 촘촘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재부랑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계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입니다.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기획조정관 황권순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 무효인데, 무효.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인사하시면……

국가유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하셨으니까 앉으시지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34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우리 기관은 주의 의견은 수용합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 ‘사업담당자 주의’에서 이것을 ‘기관 주의’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문구를 변경 요청하시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떤 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시정요구사항 밑에 보면요, ‘무력화한 사업담당자를 주의 조치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담당자라는 표현을 뺏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누구를 주의 조치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기관에 대한 주의로……

○김대식 위원 기관으로 하라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관장을 주의 조치할까요?

○김대식 위원 기관장이예요, 기관이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무력화한 기관’이나 ‘국가유산청’이라고 표현하면……

○이소영 위원 위에 있는 주의 자체가 기관에 대한 주의잖아요. 이걸 통합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관의 의견에 공감을 한다면 굳이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것 실은 조금 보니까 오늘 계속 했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사항이잖아요. 이것도 저희 다 보류하지 않았나요, 일괄적으로?

○전문위원 정대영 그런데 이것은 기관에 대한 게 아니라 사업담당자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도개선이나 주의, 시정 이런 건데 이것은 담당자한테 주의를 주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주의는 수용을 하는데 ‘사업담당자’라는 표현이 좀……

○김대식 위원 주의는 수용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주의는 수용합니다.

○김대식 위원 주의는 수용하는데 사업담당자를 빼 달라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요. 동의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결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문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담당자를 빼 버리면 말이 안 되는데?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관이 되면 국가유산청이 되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국가유산청이 되는 거지.

○조정훈 위원 그러면 셀프 주의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청을 주의 조치할 것’ 이런 문구를 하게 해 달라는 말씀……

○소위원장 박형수 그건 안 되는 말이고.

○이소영 위원 위의 것 상임위 의견이 주의인데, 이것도 주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통합해도 되겠네. 위의 문장은 적정하게 교부를 해 가지고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의미고 아래 것은 미리, 잘못 교부한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니까 잘못 교부한 것에 대해 가지고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는 집행을 제고할 것 이렇게 한 문장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고 전체는 주의로 하고, 그 정도 정리하

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위의 것은 위원장님, 위의 거가 되면 이 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나눠서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다른 부처 내용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내용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7조를 어겼다는 내용이고 상임위는 그것을 수시점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시정요구 유형을 우리가 보류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질문은, 이게 22년·23년에도 시정요구 받았는데도 24년에 또 했어요. 좀 미안한 질문인데, 이것 담당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달라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부처에서 왜 자꾸 이 사업만 계속 이렇게 어기고 하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 집행률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 두 차례 이상 나눠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준 거잖아요, 지금. 아니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두 차례에 나눠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뭘 위반한 거예요, 지금?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매우 낮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여기 전액 교부라고 돼 있는데?

○조정훈 위원 동 사업을……

○소위원장 박형수 나눠서 교부했다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나눠서 교부했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나눠서 교부를 했는데 이것을 전액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전액 교부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교부하는 방식은 두 번에 나눴다?

○소위원장 박형수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것은 보조금 관리지침을 따른 거네, 나눠서 집행을 했으면.

○조정훈 위원 그런데 실집행률이 낮았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까지 다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굳이 꼭 쫓자면 1회 집행하고 집행률이 낮으면 2회 집행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다 집행해서 결과적으로 실집행률이 매우 낮아졌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차장님,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그러면 통합관리지침 17조 2

항 이것 두 번으로 나눠서 교부하라는 건 지켰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정대영 17조 1항이 두 번 교부한 거고요.

○이소영 위원 아, 그러면 2항은……

○전문위원 정대영 2항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소영 위원 아, 검토하여…… 그러면 1항을 위반한 건 아니고?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아까 우리가 보류한 것은 거의 다 1항을 위반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대영 비슷합니다. 1항과 2항 취지는 비슷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국회에 보고, 그때…… 이것 정확하게 보자면 국회 보고는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렇지요? 이게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조치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를 하셨거든, 유산청에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것은 다음 세계유산 관련된 부분이고요.

○조정훈 위원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2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실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48.6%입니다. 지금 낮은 합니다마는 23년도에 비해서는 실집행률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몇 퍼센트에서 올라간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40에서 48%.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8%가 올라갔는데 50%도 안 됐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런데 올해는 80%로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소영 위원 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가는 것은 맞는데……

○김대식 위원 주의로 하는데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 주의는 수용하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수용합니다.

○김대식 위원 수용하는데 이 문구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면, 합하고 이 위에다가 ‘보조사업자 집행 촉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엄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엄수하고 특히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이소영 위원 아주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됐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정훈 위원 17조 2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하고 문구는 지금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35쪽 연번 3번입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달리 미운영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주의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139쪽 연번 4번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나중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폐지 고려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인데 동 내용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시정요구사항 내용 중에 사업 폐지를 고려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업 폐지를 고려하라?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조정훈 위원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5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4명 한 거예요? 15억 써 가지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100명 중에 4명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폐지 안 하고 싶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고요.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국가유산청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 부처에 다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조정훈 위원 무슨 00인턴십 지원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사업 폐지를 고려하고’를?

○김대식 위원 부실하므로 참여자 정규직 전환율 저조 등 실적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러니까 ‘사업 폐지를 고려하고’ 이 말을 삭제해 달라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가 이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국가유산 산업에 많이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게 목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107 대 4는 아주 아쉬운 비율이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계속 하면 이 전환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실은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협의상 지금은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보다 더 이 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할 것 같다고 주장하신 근거가 저는 좀 약해 보이네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물론 정규직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지표입니다마는 이 6개월 동안 인턴 끝나고 나서 창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를 계속 다니지 않지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창업은 몇 명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 35% 정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국가유산청에 6개월이라도 와서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해 보고 나가는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 그냥 진행하게 해 달라, 꼭 정규직 되지 않아도 그런대로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가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으니 유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맞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저도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런데 107명 중에서 4명의 정규직이 좀 아쉽다. 아쉬운데, 여기 4명 중에서 3명이 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없어서 그런지……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을 만드는 사업은 아닌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아무래도 참여한 업체가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 폐지를 고려하고’ 삭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너무 인심 쓰시네요. 이것은 이 사업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폐지를 고려하는 게 주 취지인데 그것을 빼 버리면 오히려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

지고 이 사업을 더 하라는 취지가 되는 건데……

○**김대식 위원** 아니,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좀 더 주자는 뜻이지요, 교육위원이니까.

○**이소영 위원** 그리고 또 올해 예산안 심사 전까지 계획을 예결위에 제출할 것 이것은 수용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수용합니다.

○**이소영 위원** 예산심사 때 저희가 엄밀하게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조정훈 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6억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일단 그 문구는 삭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 개선해 가지고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지속하고 아니면 예산을 확 깎아 버리고 이래도 되지, 삭감을 하든지 하면 되지요.

○**김성희 위원** 요즘 인턴 하려면, 인턴 하려고 인턴 해야 되는 세상인데 인턴 사업이 많은 것 좀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이걸 나중에 챙겨 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40쪽, 연번 6번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종합정비 성격의 정기보수 일반사업으로 분리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유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일단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분리편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은 총액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일반사업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번 7번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 기관은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합니다. 다만 그 문구 중에 서요 ‘개선된 임금체계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왜요? 임금 안 올리려고? 왜 그게 부담이 되시지요, 임금체계 현실화가?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돌봄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미한 수리나 일상 관리, 모니터링이나 청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계로도 충분히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문구를 그렇게 수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행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되는 것……

○**조정훈 위원** 대안 문구를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수행 인력 채용을 위한 사업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국가유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대식 김성희 노종면 박형수 이소영 임미애 조정훈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전문위원 정대영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운영지원담당관 김종진

감사원

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

총무기획관 노혜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영수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보건복지관 김은성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정책기획관 임철언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술정책관 신은향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기획조정관 김성훈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병무청  
차장 최규석  
기획조정관 문경식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기획조정관 홍미루  
경찰청  
차장 유재성  
기획조정관 도준수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소방청  
차장 이영팔  
기획조정관 오승훈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사무처장 이정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최수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운영관 한성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환

기획조정실장 옥미선